

비매품/무료

03020



9 791163 571414

ISBN 979-11-6357-141-4

발간등록번호

12-1371748-000054-01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세미나

#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 
- 일시/장소 : 2019. 10. 17.(목), 9:00 / 벅스코 205호 1
  - 주최/주관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세미나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2019. 10. 17. (목)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제 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세미나

## □ 추진 배경

- 사무기구 법제화\* 등 최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도서관현장과 함께 미래 도서관의 역할 등 논의

\*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2(사무기구) 신설(시행 '19.10.8./대령 제30111호, '19.10.8, 일부개정)

## □ 세미나 개요

- 세미나명 :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 일시·장소 : 2019. 10. 17.(목), 9:00 / 벅스코 205호 I (150석)
- 주최·주관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 진행 순서(안)

사회 및 좌장 : 고 영 만 위원(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시 간		내 용
9:00~9:20	20'	✓ 등 록
9:20~9:30	10'	✓ 인 사 말 · 신 기 남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9:30~10:30	60'	✓ [발제 1] 책문화 활성화를 위한 출판-도서관-독서정책 협력 방안 · 정 윤 희 위 원(출판저널 대표)
		✓ [발제 2] 미래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전략 · 이 지 연 위 원(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0:30~10:40	10'	휴 식
10:40~11:00	20'	✓ [발제 3] 국가도서관위원회(가칭)의 위상과 과제 · 이 상 복 위 원(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1:00~11:50	50'	✓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11:50~12:00	10'	✓ 마무리 및 폐회



---

# 목 차

---

- ✓ [발제 1] 책문화 활성화를 위한 출판-도서관-독서정책 협력 방안 ..... 1  
정 윤 희 위 원(출판저널 대표)
  
- ✓ [발제 2] 미래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전략 :  
콘텐츠 파워의 극대화 ..... 21  
이 지 연 위 원(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 [발제 3] 국가도서관위원회(가칭)의 위상과 과제 ..... 43  
이 상 복 위 원(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 [별 첨]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19.10.8./대통령령 제30111호)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기구 조항(제5조의2) 신설 ..... 53





**발제 1**

**책문화 활성화를 위한  
출판-도서관-독서정책 협력 방안**

**정 윤 희 위 원**  
(출판저널 대표)





# 책문화 활성화를 위한 출판·도서관·독서정책 협력 방안<sup>1)</sup>

정 윤 희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4차산업적용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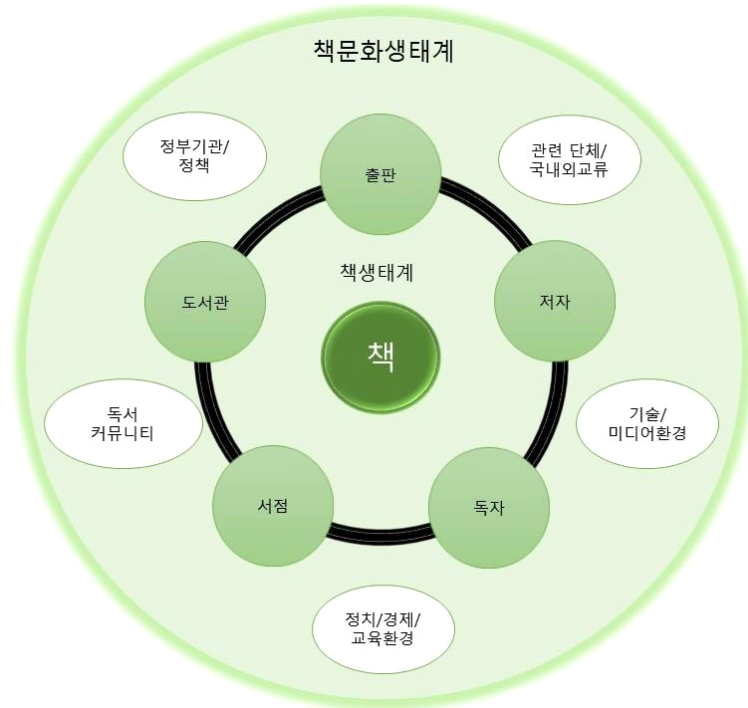
## 1. 들어가며

책문화란 책이 생산(출판)되고 축적(도서관)되며 소비되는(독서) 다양한 활동들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주며, 결국 한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sup>2)</sup> 특히 책문화의 주체, 정책,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책문화가 성장하거나 정체하거나 소멸한다. 따라서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책문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책문화가 성장한다는 의미는 양질의 책이 생산되며, 양질의 책을 도서관에서 수서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공급하며, 결국 국민들이 좋은 책을 읽는 풍요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은 모두 책문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책이 생산되고(출판), 축적되며(도서관), 소비되는(독서) 점에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정윤희·김기덕(2019)는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위하여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자율적으로 구동해야 하는데,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조율하며 도와주는 힘이나 기능을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책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sup>3)</sup>, 책이라는 유형 및 무형 콘텐츠가 다양하게 기획 및 창작되고 독자인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sup>4)</sup>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이 생산(출판)되고 축적(도서관)되며 소비되

1) 본 발표문은 본 발표자가 『문화콘텐츠연구』에 게재된 논문으로 본 발표를 위하여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정윤희,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출판정책·도서관정책·독서정책 비교연구」, 『문화콘텐츠연구』, 제15호, 2019, 69-104쪽.  
2) 국내 문헌에서 '책문화'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본 결과 학술연구에서는 출판전문지 『출판저널』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부산지역 책문화의 터줏대감 영광도서'(『출판저널』, 1990년 5월 20일자, 정혜옥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라는 부제에서 책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산의 서점 영광도서를 소개했다. 이후 '취약한 책문화가 낳은 베스트셀러'(『한국논단』, 1990, 14권, 122-129, 이중환), '책문화의 최일선 심부름꾼 인천중앙도서관 이동도서관'(『출판저널』, 1991년 93권) 등 책문화라는 키워드로 출판, 서점, 도서관, 저술, 독서 등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결과들이 있다. 즉 책문화라는 개념 속에는 출판, 서점, 도서관, 저술, 독서 등 책과 관련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출판저널>을 발행하고 있는 본 발표자는 <출판저널> 통권 500호부터(2017년 9월호) 특집좌담 '책문화생태계 모색과 대안'이라는 시리즈를 기획하였다. 기획의도는 저자-출판-유통-서점-도서관-독자에 이르기까지 책문화가 생태계적 관점에서 선순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었다. 좌담 6회 분량은 단행본 『책문화생태계의 현재와 미래』(카모마일북스, 2018)로 출간되었으며, 일본으로 수출되어 2018년 11월 11일 한일 동시 출간되었다.  
4) 정윤희·김기덕, 「전자출판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책문화생태계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 86호, 2019, 91-92쪽.

는(독서) 과정들을 볼 때 정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1> 책문화생태계 구성도<sup>5)</sup>

## 2.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해보기 위하여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 관련 대표적인 법률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을 중심으로 하여 법 제정 시기,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정책의 주요 내용, 정책 소관 부서를 살펴봄으로써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특징과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정책은 인간에게 본질적·근원적인 문화에 관한 정책이며, 사회의 문화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문화가 갖는 사회적 의의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sup>6)</sup>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이 문화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시각인 책문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정책은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요소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화생활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참여를 확대시키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며, 문화다양성을 진작시킴으로써 인적자원과 재정자원의 확대로 문화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sup>7)</sup>는 문화정책의 목적을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이 함께 성취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5) 정윤희·김기덕, 위의 책, 75쪽.

6) 이흥재, 『문화정책』, 논형, 2006, 18-19쪽.

7) 정철현,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2005, 263쪽.

한편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기까지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 홍보와 체제 홍보를 담당하던 공보부로부터 시작된다. 정부의 정책 홍보와 체제 홍보를 담당하던 공보부는 1968년 문화공보부로 개편되어 문교부 산하에 있던 문화행정을 이관 받아 1990년까지 문화예술 진흥업무를 총괄하였다. 1990년에 문화공보부는 문화부와 공보처의 두 개 부처로 나뉘고, 1998년 공보실은 축소되었다가 2007년 폐지되었다. 문화부는 2003년 체육부를 흡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sup>8)</sup>

## 1) 출판·도서관·독서정책의 도입 흐름

우리나라는 1990년 문화부가 신설됨으로써 문화정책 시대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1961년에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sup>9)</sup>, 1963년 10월 28일 ‘도서관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에 문화부가 신설되었고, 1993년에 책의해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다. 2002년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 제1차 출판인쇄산업진흥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2006년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제2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이 시행된다. 또한 대통령소속 도서관정책위원회가 설립된다. 2009년에는 제1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과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시행된다. 2012년에는 독서의해로 지정되었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었고, 제3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이 시행된다. 2014년에는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과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이 시행된다. 2017년에는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이 시행된다. 2018년에는 199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책의해로 지정되었다. 2019년에는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과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이 시행된다. 부길만은 한국의 출판역사를 크게 문민정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면서, 1909년 출판에 대한 법적 규제인 출판법이 시행되었는데 총독부 경무국(警務局) 도서과에서 모든 출판물을 사전검열하는 등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는 규제 중심의 출판정책이었다고 설명한다.<sup>10)</sup> 또한 우리나라 문화산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문화부에 문화산업국이 신설된 1994년이라고 보았다.<sup>11)</sup>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판, 도서관, 독서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과 장기 계획의 수립 시기가 다르며 부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도서관을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여 1994년에 ‘도서관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에

8) 김광식, 『문화와 정책 지난 시대를 회고하다』, 시간의물레, 2013, 161쪽.

9)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출판은 저자와 독자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해 지식의 보급, 사상의 전파, 문화유산의 전수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역사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주로 통제의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진흥의 대상으로 변화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정치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경우가 많았고, 1961년에 제정된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1973년에 제정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통해 출판에 대해 상당히 강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중심의 법률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진흥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두 법률을 폐지하고 2002년 ‘출판및인쇄진흥법’을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0) 부길만, 『한국출판의 흐름과 과제1』, 시간의물레, 2014, 268-269쪽.

11) 부길만, 위의 책, 279-280쪽.

도서관 장기 정책이 시행되었다. 출판산업의 장기정책은 2003년, 독서문화의 장기정책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면 세 가지의 정책들이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서 시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출판정책 이전에 혹은 함께 독서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책문화정책의 통일성이나 효과성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표 1> 출판·도서관·독서 관련 법률 제정 및 장기정책 비교(법률제정 연도순)

법명	법률 제정 시기	목적	기본계획수립 시행 시기
도서관및독서진흥법*	1994.3.24. 법률 제4746호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은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	-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년)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년)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2023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002.8.26. 법률 제6721호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1차 출판·인쇄산업진흥계획 (2003-2007년) -제2차 출판·인쇄산업진흥계획 (2007-2011년) -제3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2012-2016년)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2017-2021년)
독서문화진흥법	2006.12.28. 법률 제8100호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	-제1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2009-2013년)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2014-2018년)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2019-2023년)

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2006년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법되었다.

##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2002년 8월 26일 ‘출판및인쇄진흥법’(법률 제6721호)으로 제정된 후(2003년 2월 27일 시행), 2007년 7월 19일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변경 및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02년 출판진흥법 제정을 위한 당시의 출판계는 출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에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당시의 분위기를 『출판저

널』 1999년 통권 260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의 육성을 지향하는 출판진흥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중략) 문광부는 '출판진흥법 제정안 용역 시행'을 위해 각 출판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종래 규제 차원의 단편적인 법률로 분산돼 있는 출판 관련 법체계를 정비,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외국 간행물 수입 및 배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출판·인쇄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단일 법률로 일원화한다는 것. (중략) 한편 인쇄업계는 출판과 인쇄를 분리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대한인쇄출판문화협회는 "출판과 인쇄산업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운영·생산체계가 전혀 다른 만큼 법안은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출판진흥법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 듯 새로운 출판환경을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법이 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무엇보다 실행이 가능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1994년에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채 사문화된 사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sup>12)</sup>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2012년에는 출판진흥을 위한 기구로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었다.

### 3) 도서관법

우리나라의 도서관 역사에서 근대도서관의 시작은 일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서 조선도서관협회(현재 한국도서관협회 전신)가 만들어졌고 선각자들에 의해 체계를 잡아가다가 1963년에 처음으로 '도서관법'이 제정되면서 도서관이 제도권 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sup>13)</sup> 우리나라는 1991년 문화부로 도서관 정책이 이관되면서 교육부 산하에서 도서관이 교육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기관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sup>14)</sup> 1994년 3월 24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도서관과 독서정책을 분리하여 2006년 12월 20일 '도서관법'으로 개정 및 제정되었고 2007년 1월 1일부터 '도서관법'이 시행되었다.<sup>15)</sup>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나누어서 개정된 배경은 "도서관 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의 진흥을 위

12) 오완진, 「새 출판진흥법 제정을 둘러싸고 출판계 분주」, 『출판저널』, 통권 260호, 1999, 2쪽.

13)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문화』, 통권 20호, 1979, 5쪽.

“현행 도서관법은 당초 입안과정에서 전국의 시·도구에 공공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등 도서관 육성을 국가정책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국가의 재정사정을 이유로 다만 도서관활동을 권고하는 미온적인 법률로 제정되어 공시되고 말았다. 당시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 육성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표현되지 않은 이러한 법제정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일지라도 법제정 자체로서 도서관육성책을 모색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입법을 환영하였다.”고 설명한다.

14) 송승섭, 「도서관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책문화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카모마일북스, 2018, 203쪽.

문화부로 도서관정책이 모두 이관된 것은 아니고 현재도 문화부와 교육청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 행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었다.

15) 한국도서관협회, 「특집-도서관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도서관문화』, 통권 제47호, 2006년, 25-47쪽.

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일반에게 독서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다”는 취지이고, 2개의 법률로 나뉘어 각 부문의 발전을 이끌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될 수 있다는 배경이 담겨 있다.<sup>16)</sup> 특히 ‘도서관법’ 제정의 가장 큰 핵심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정책개발·조정·분석 기능을 담당할 도서관 정책 자문기구로서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1989년 도서관발전위원회(문교부)를 시작으로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문화부, 2000년 폐지), 2002년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문화관광부) 등으로 이어져 왔는데, 보다 강력한 정책기구로서 대통령소속 위원회라는 성과를 얻어냈다.<sup>17)</sup> 이에 따라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각 지역별로 대표도서관제도를 두어 중앙정부의 도서관 정책보다는 지방정부의 도서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비전을 마련해 두었다. 2007년 제1기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설립 6개월 만에 조직이 축소되고 위상이 약화되었으나<sup>18)</sup>, 2018년 4월 9일 제6기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설립된 지 10년만인 2018년 10월 23일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7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상을 되찾고 있다.<sup>19)</sup>

#### 4) 독서문화진흥법

도서관정책은 정부수립 이후 문교부에서 주관해 오다가 1990년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문화부가 신설되었고 1991년 4월 도서관정책 업무를 문화부로 이관하면서 도서관 중심으로 한 독서정책이 문화적인 분야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독서정책의 역사는 1992년 문화부의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통하여 1993년을 ‘책의 해’로 지정하고 ‘책의 해 사업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 시작하였다.<sup>20)</sup> 1994년 3월 24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독서진흥을 위한 법률로서는 한계가 드러났다.

김재윤(1998)은 “4년 전 법률 제4746호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다. 4년 전에 도서관과 독서진흥을 위해 법까지 제정되었다면 출판계는 불황이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호황을 누리거나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중략) 결국 이 법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사문화된 법이었으며, 책의 해 기념 조형물에 불과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략) 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전혀 조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10조에 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도 1년에 1, 2회 정도 회의를 열어 도서관 발전, 도서관 협력망 운영, 독서진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이 없으니

16) 한국도서관협회, 위의 책, 42쪽.

17) 한국도서관협회, 위의 책, 43쪽.

18) 정윤희, 「출판저널이 만난 사람-제6기 신기남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출판저널』, 통권 제505호, 2018, 20-31쪽.

19) 송현경,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실 문 연다」, 『내일신문』, 2018년 10월 24일자.

20) 이용준, 「직장 독서동아리의 특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독서연구』, 제31호, 한국독서학회, 2014, 166쪽.

활동이 없을 수밖에 없다. (중략)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 10장 54조 가운데 실질적인 독서진흥에 관련된 조항은 1개장, 5개조항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sup>21)</sup>

이러한 문제점으로 도서관과 독서정책을 분리하게 된 배경이 되었고 2006년 12월 18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제정되었고 2007년 4월 5일부터 ‘독서문화진흥법’이 시행되었다. ‘독서문화진흥법’의 목적은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독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독서진흥, 학교의 독서진흥, 직장의 독서진흥 등 독서진흥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sup>22)</sup>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국민독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등 독서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1988년 ‘읽기진흥법’을 제정하고 2002년 ‘낙제학생방지법’을 통해 읽기교육을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은 ‘북스타트 운동’을 통해 영유아부터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독일은 1988년부터 ‘독서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5년 ‘문화활자진흥법’을 제정하고 아침독서운동, 가정독서운동 등을 개발하여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sup>23)</sup>

독서문화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국가의 문화정책으로서 ‘독서문화진흥법’이 2006년에 이르러서야 법률로 제정되었다는 것은 선진국과 비교하자면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문화진흥법’으로 한국의 독서정책은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장단기계획-실행-평가의 순환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는데, 기본계획, 시행계획, 연차보고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도구이자 한국의 독서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sup>24)</sup> 특히 책을 읽고 향후하고 소비하는 지적사회의 문화를 만드는 독서정책은 출판 및 도서관정책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가장 늦게 시작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책문화 정책에 큰 시사점을 준다.

### 3.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특징

#### 1)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이두영은 우리나라 출판진흥정책은 ‘국민의정부’부터 적극적으로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sup>25)</sup>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따라 출판문화정책의 주무를

21) 김재윤, 「껍데기뿐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어떻게 살릴까」, 『출판저널』, 통권 233호, 1998, 11쪽.

22) 국가법령정보센터

23) 최장현,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과 독서문화진흥정책」, 『도서관문화』, 통권 49호, 2008, 46쪽.

24) 서혜란, 「한국과 일본의 독서정책 분석」, 『독서연구』, 통권 제31호, 2014, 104쪽.

25) 이두영, 「출판정책의 이념과 출판산업 비전: 참여정부의 ‘출판진흥계획’ 좌표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46호, 2004, 151쪽.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매 5년마다 출판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제4조)는 조항에 따라, 2003년 5월 21일 제1기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을 발표했다.<sup>26)</sup>

이용준은 제1기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에 대하여 출판정책을 산업적 차원에서만 인식하고 문화적 차원의 고려가 미비된 인식 기반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출판정책을 장기적으로 끌어 갈 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국민의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진흥정책 등 수요자 중심의 출판정책이 추진되도록 독서진흥법 제정의 설립을 제안하였다.<sup>27)</sup> 한주리의 도서관 인프라 구축 및 국민 독서환경 구축이 필요하다<sup>28)</sup>는 제안과 맥을 같이 한다.

<표 2> 제1차~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보듯이, 제3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과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에 도서관 및 독서정책과의 협력 내용이 담겨 있긴 하나 적극적인 협력은 미흡하다. 특히 이두영(2016)은 한국의 출판산업은 ‘진흥’을 목표로 정부의 출판정책이 수립, 집행되기 훨씬 이전인 1996년을 전후해서부터 ‘위기적 상황’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위기적 상황은 그동안 세 차례나 정부가 출판정책으로 다각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전개해 왔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악화일로에 있다<sup>29)</sup>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출판정책의 미흡함을 발견할 수 있다.

<표 2> 제1차 ~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주요 내용

구분	추진 과제	정책 협력 과제
제1차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2003-2007년	①출판산업의 인프라 구축 ②양서출판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③전자출판시장의 세계 주도국 지위 확보 ④인쇄문화산업 진흥 ⑤출판유통 현대화 기반 조성 및 유통질서 확립 ⑥출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⑦지방 출판문화의 육성 ⑧남북 출판교류 활성화	없음
제2차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①출판지식 국가경쟁력의 체계적 관리 ②출판지식 생산력 강화 ③출판지식 유통구조 혁신 ④디지털출판 활성화 기반 구축 ⑤국민의 ‘독서권’ 보장과 독서환경 조성 ⑥출판지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⑦출판지식 전문인력 양성 ⑧출판문화 균형발전 ⑨출판지식산업 진흥기구 설립 ⑩출판진흥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국민의 ‘독서권’ 보장과 독서환경 조성
제3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2012-2016년	①출판 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 ②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③전자출판 및 신성장 동력 육성 ④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⑤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 출판진흥원을 중심으로 출판진흥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출판단체 및 업계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26) 이용준, 「한국 출판정책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제1기(2003-2007)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2006, 통권 제50호, 159-160쪽.

27) 위의 책, 174-178쪽.

28) 한주리, 「출판정책 평가와 발전 방향 연구: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2012-2016)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산업에 대한 출판사 종사자의 인식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 72호, 2015, 135쪽.

29) 이두영, 「출판정책의 이념과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관건」,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2017-2021) 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한국출판학회, 2016, 59-69쪽.

구분	추진 과제	정책 협력 과제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2017-2021년	①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 법제 개선 ②진흥원 개편 및 연구센터 설립 ③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서 인식 확산 ④출판산업 고급인력 활용 및 창업 지원 ⑤출판유통 선진화 체계 구축 ⑥지역서점 상생발전 체계 구축 ⑦글로벌 수출 지원 체계 구축 ⑧수출콘텐츠 개발 및 현지화 지원 ⑨출판기금 확충 및 출판콘텐츠 투자 활성화 ⑩출판콘텐츠 다중활용 등 비즈니스 활성화 ⑪중견(강소) 출판사 육성 및 TOP5 콘텐츠 개발 ⑫지역 핵심 거점별 출판 인프라 구축 ⑬책의 해 지정 추진 등 출판수요 진작 ⑭전자책, MCN 등 청년층 출판수요 확대 ⑮휴먼큐레이션 등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⑯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독서운동 추진	- 출판 친화적 법제 개선 : 독서문화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독서진흥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 독서진흥시책과 관련된 추상적 조항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시행령에 규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제3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7년 ‘도서관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제1차(2009-2013년), 제2차(2014-2018년)까지 시행되었고, 제3차(2019-2023년) 계획이 시행 중이다. 윤정옥은 제1차 및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도서관 전체를 위하여 통합적인 도서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마련되고 있으나 이를 이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행단계에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인 상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대표도서관을 자임하며 모든 관종의 도서관, 그리고 모든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요구하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sup>30)</sup>고 지적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sup>31)</sup>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하여 자료 확충 및 공공서비스 정책을 시행한다. 이런 점에서 도서관정책은 출판정책과 독서정책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됨으로써 출판-도서관-독서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3> 제1차~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보듯이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도서관 협력체계 강화’라는 과제를 명시함으로써 도서관계-출판계-독서계의 협력체계를 위한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 별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도서관 계획을 심의 평가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30) 윤정옥, 「제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논집』, 통권 48호, 2014, 177-193쪽.

31)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공도서관은 1,042개관으로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4.9만명이며,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2.03권이다.

〈표 3〉 제1차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주요 내용

구분	추진 과제	정책 협력 과제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년)	①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②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 ③지식정보격차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④국가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도서관 체계 재정립 ⑤교육/학술/연구 핵심지원센터로 대학/전문도서관 진흥 ⑥도서관 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 제도의 선진화 ⑦지식정보 확산 및 공유를 위한 U-Library 구현 ⑧도서관 협력기반 강화로 글로벌 도서관정보서비스 구현	없음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년)	①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확대 ②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③국가도서관의 정체성 및 역할 강화 ④교육·학습 및 학술연구정보 지원서비스 강화 ⑤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⑥도서관 자원의 연계·공유·협력 ⑦도서관 법·제도 정비	없음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2023년)	①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②이용자 정보 접근의 편의성 확대 ③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④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⑤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⑥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⑦적극적 정보 복지 실현 ⑧공간의 개방성 확대 ⑨경계를 넘는 서비스 연계 ⑩도서관 운영의 질적 제고 ⑪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⑫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⑬도서관 인프라 확대	도서관계-출판계-독서계 협력 체계 구축

### 3)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은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법정계획(5년)이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준거 및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단위 기본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독서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지속가능한 독서정책을 이끌어내려고 하기 보다는 전시효과를 더 중시하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나 실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sup>32)</sup>, 전시효과와 행사에 치중, 비전에서 제시된 국가지식경쟁력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점, 재정과 인적자원 확보 문제<sup>33)</sup>가 지적되었다.

한편 제1차 독서문화진흥계획에는 ‘지역 내의 독서 관련 인프라 확충 지원’ 과제로 도서관 확충 및 장서 확보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제2차 독서문화진흥계획에는 ‘독서진흥업무 추진 전담조직 설치’ 과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독서, 도서관, 출판 등을 연계한 종합적·체계적인 독서진흥 업무 전담기구 설치 추진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이 도서관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제3차 독

32) 서혜란, 앞의 책, 104-106쪽.

33) 정옥년, 「독서문화진흥정책 실행 성과와 향후 과제」, 『책 읽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 실현 방안,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2014, 13쪽.

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는 2차 계획보다 적극적으로 출판정책과 도서관정책과의 연결과 협력을 담고 있다. ‘맞춤형 북큐레이션 서비스’ 과제로 공공도서관 대출 등과 연계 추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북큐레이션 기능 강화를 통한 도서관·독서 활성화 지원 내용과 ‘독서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정책 영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과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때 독서문화진흥계획이 도서관과 출판정책와의 연결과 협력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 제1차 ~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추진 과제	정책 협력 과제
<p>제1차 독서문화진흥계획 (2009-2013년)</p>	<p>①지역의 독서환경 조성 ②가정의 독서환경 조성 ③어린이집,유치원 독서환경 조성 ④학교의 독서환경 조성 ⑤직장의 독서환경 조성 ⑥우수도서 출판 및 보급 ⑦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⑧전 국민 대상 무료 독서교육 실시 ⑨독서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⑩독서정보 DB 구축 ⑪독서동아리 활성화 ⑫각종 계기별 독서운동 ⑬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운동 ⑭국내외 우수사례를 활용한 독서운동 ⑮소외계층 대상 독서운동 ⑯독서장애인 독서활동 지원 ⑰노인의 독서활동 지원 ⑱병영에서의 독서활동 지원 ⑲교도 소에서의 독서활동 지원 ⑳복지시설에서의 독서활동 지원 ㉑다문화가정의 독서활동 지원 ㉒독서장애인 관련 제도 정비</p>	<p>* 지역 내의 독서 관련 인프라 확충지원 : 도서관 확충 및 장서 확보 지원</p>
<p>제2차 독서문화진흥계획 (2014-2018년)</p>	<p>①독서진흥 협력체계 구축 ②지역 독서공동체 조성 ③학교 독서환경 개선 ④책임는 직장 만들기 ⑤우수 독서자료 지원 ⑥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⑦독서문화 기반 확충 ⑧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⑨다양한 독서동아리 활성화 ⑩맞춤형 독서교육 및 독서프로그램 보급 ⑪독서정보시스템 구축 ⑫국민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⑬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민독서 참여 확산 ⑭지역 풀뿌리 독서문화 확산 ⑮독서를 통한 인문정신 문화 확산 ⑯독서장애인 독서서비스 확대 ⑰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강화 ⑱병영,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⑲다문화가정의 독서접근성 제고</p>	<p>* 독서진흥업무 추진 전담조직 설치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독서, 도서관, 출판 등을 연계한 종합적.체계적인 독서진흥 업무 전담기구 설치 추진</p>
<p>제3차 독서문화진흥계획 (2019-2023년)</p>	<p>① 함께 하는 독서공동체 확산 지원 ②일상에서 책 읽는 환경 조성 ③나와 우리가 만드는 독서문화 정착 ④사람 중심 독서로 공감능력 제고 ⑤신중년 참여독서 실현 ⑥대중매체를 활용한 독서문화 확산 ⑦독서나눔문화 활성화 ⑧생애주기별 맞춤독서 강화 ⑨학교 및 유아독서 생활화 ⑩포용적 독서복지 체계 구축 ⑪독서정책기반 조성 ⑫디지털 독서 확산 기반 마련 ⑬독서가치 및 독서요인 분석 연구 강화</p>	<p>* 맞춤형 북큐레이션 서비스 : 공공도서관 대출 등과 연계 추진, 공공도서관의 북큐레이션 기능 강화를 통한 도서관·독서 활성화 지원 * 독서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정책 영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p>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 4. 정책 주무 부서의 현황과 특징

### 1)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2007년 5월 22일 ‘도서관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설치되었고, 도서관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 기구인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지원을 담당한다. 2007년 6월 12일 ‘도서관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의 역할을 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 출판정책, 독서정책의 주관 부서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2018년 9월 15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도 상에서 출판과 독서를 담당하는 부처는 미디어정책국의 ‘출판인쇄독서진흥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9월 4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문화예술정책실의 인문정신문화과에서 담당하던 독서정책 업무를 미디어정책국의 ‘출판인쇄산업과’로 흡수하면서 ‘출판인쇄독서진흥과’로 변경하였는데, 출판정책과 독서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 방안이다. 한편, 도서관정책은 문화예술정책실의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담당한다. 즉 정부의 정부 소관부서가 출판-독서는 연결되어 있지만, 도서관은 떨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출판산업진흥과 독서문화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12년 7월에 설립되었다.

###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진흥을 위한 법정기구로 2012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전신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에 따른 것으로서, 출판문화사업이 토대가 되는 문화강국 실현의 중추기관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2년 7월 26일 초대 원장이 임명된 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사회, 간행물윤리위원회, 1실, 2본부, 1사무국, 9팀으로 운영되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18년 6월 1일 조직개편<sup>34)</sup>을 통해 원장 하에 이사회와 감사실을 두고 있으며, 원장 직속으로 정책연구통계센터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

34) 당시 원장 공모 진행 중으로 직무대행이 조직개편을 했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원장 직속으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있었고, 사무처 아래 1실(전략기획실), 3본부(출판기반조성본부, 콘텐츠산업본부, 독서진흥본부)를 두었다.

다. 사무처에는 2본부(산업지원본부, 문화지원본부)와 2팀(기획조정팀, 운영지원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산업지원본부에는 콘텐츠지원팀, 수출지원팀, 미래산업팀, 출판유통지원센터가 있다. 문화지원본부에는 독서지원팀, 인문지원팀, 지역출판지원팀, 출판산업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 5.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지금까지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과 관련하여 법률 제정, 장기계획인 5개년 계획, 정책담당 부처를 중심으로 고찰해 본 결과,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이 당면한 한계가 있다.

첫째,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이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각 정책의 수립 시기, 정책 수립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부족하다. 현재 출판정책과 독서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담당하고, 도서관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담당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정책과 독서정책을 수행한다. 그리고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한다.

둘째,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세 정책의 엇박자는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다. 도서관정책과 같은 중요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도 출판계 위주로 추진되며 도서관정책의 의견 수렴이나 발전적인 역할 논의가 미흡했다<sup>35)</sup>는 점은 한 예라고 할 것이다. 도서관정책 변화는 수서 종류와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고 수서 예산 배정까지 염두에 둔 논의는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본다.

5년마다 수립되고 시행되는 각 정책의 가장 중요한 장기계획인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정책 수립과정 및 추진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협력과 추진이 필요한데, 정책을 수립하는 시점부터 누가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완성되어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정책 협력이 미흡하고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책문화생태계적인 관점에서 가능할 것이다. 정책 입안이나 추진의 주체는 필요하지만 적절한 단계에서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와 심층 논의를 거치며 점검하는 과정은 정책이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서론에서도 논의했듯이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은 책문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책이 생산되어 도서관에서 축적되고 독서라는 활동을 통해 소비하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독서정책 담당 부처도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인 통합과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독서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소관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방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5) 백원근, 「특집좌담-2017년 책문화생태계 이슈와 2018년 전망」, 『출판저널』, 통권 502호, 2017, 69쪽.

등이다. 이와 같이 ‘출판-도서관-독서’의 정책을 통합한 부처가 없다는 것은 독서환경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들을 포용하는 책문화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출판-도서관-독서’를 통합한 시스템을 만들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유기적인 정책 수립이나 추진이 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을 때 예산의 낭비나 중복 투자, 주체들 간의 갈등 그리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투자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판-도서-독서정책을 세우고 다양한 세부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출판산업은 위축되어가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 수는 줄어들고, 독서율이 저하하는 현실이 이를 말해 준다.<sup>36)</sup>

## 6. 맺음말을 대신하여 : 출판정책-도서관정책-독서정책의 신뢰와 상호협력

### 1) 정책 수립 초기부터 정책협력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을 수립하는 초기부터 정책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가장 큰 정책인 5개년 계획 안에는 비전, 목표, 추진과제들이 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어떻게 관련 정책들과 연결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다. 정책부서의 통합이 어렵다면, 각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담당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정책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시스템은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정책 시행 중에도 수시로 정책을 상호보완하며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만들어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효과를 높여야 한다. 특히 책문화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과 관련 단체, 학회, 시민 등 민관 거버넌스 추진도 중요하다. 정책부서의 전문화는 지속가능한 책문화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 2) 정책 추진 과정 시 장단기 상호보완평가시스템 구축

정책 추진 과정 시 장단기 상호보완평가시스템을 구축은 정책 수립 초기부터 운영되는 정책협력시스템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정책의 평가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5개년 계획 실행이 매우 미흡하다<sup>37)</sup>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출판-도서관-독서정책의 추진 과제

36) 정광열,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2018, 11-49쪽.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성인기준 종이책 독서율은 11.5% 하락, 종이책+전자책 독서율은 9.9% 하락, 연평균 독서량은 1.6권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도서관 이용률은 4년간 성인 기준 8.1% 하락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출판사 매출액 성장 정체 및 발행부수 감소 등 출판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37) 홍숙, 「출판과 도서관 관련 국정감사 주요 내용」, 『출판저널』, 통권 490호, 2016, 40-42쪽.

제3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시행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1%였다. 23개의 세부 과제 중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과제는 4개에 불과했다.

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시너지를 높여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은 5개년으로 계획되어 시행되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 중에도 서로의 정책들이 잘 연결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세심하고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 및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책문화정책의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중앙과 지역의 협력시스템

본 글에서 고찰해 보았듯이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고 정책부서가 강력한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을 모두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에서 '책문화정책국'으로 흡수 신설하고 책문화정책국 아래 출판, 인쇄, 도서관, 독서정책부서를 두어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정책 범위를 출판정책과 독서정책까지 확장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필요도 있다. 출판·도서관·독서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문화정책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책문화정책이 지속적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와의 협력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상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가 지역의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책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 김기덕·정윤희, 「문화융성과 출판」, 『문화콘텐츠연구』, 제3호, 2013.
- 김광식, 『문화와 정책 지난 시대를 회고하다』, 시간의물레, 2013.
- 김대호 외, 『미디어 생태계』, 커뮤니케이션박스, 2011.
- 김민주·윤성식, 『문화정책과 경영』, 박영사, 2016.
- 김재윤, 「겉대기뿐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어떻게 살릴까」, 『출판저널』, 통권 233호, 1998.
-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
- 방정배, 『미디어 문화정책론』, 한울아카데미, 2004.
- 백원근, 「특집좌담-2017년 책문화생태계 이슈와 2018년 전망」, 『출판저널』, 통권 502호, 2017.
- 부길만, 『한국출판의 흐름과 과제1』, 시간의물레, 2014.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2012.
- \_\_\_\_\_,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6.
- 서혜란, 「한국과 일본의 독서정책 분석」, 『독서연구』, 통권 제31호, 2014.
- 송승섭, 「도서관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책문화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2018, 카모마일박스.
- 오완진, 「새 출판진흥법 제정을 둘러싸고 출판계 분주」, 『출판저널』, 통권 260호, 1999.
- 윤정옥, 「제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논집』, 통권 48호, 2014.
- 이대호·오정숙, 『ICT 생태계에서 산업 내 산업 간 혁신 전이 연구: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 이두영, 「출판정책의 이념과 출판산업 비전: 참여정부의 ‘출판진흥계획’ 좌표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46호, 2004.
- \_\_\_\_\_, 「출판정책의 이념과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관건」,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2017-2021) 계획 무엇을 답아야 하나?』, 한국출판학회, 2016.
- 이용준, 「직장 독서동아리의 특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독서연구』, 제31호, 한국독서학회, 2014.
- 이용준, 「한국 출판정책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제1기(2003-2007)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50호, 2006.
- 이흥재, 『문화정책』, 논형, 18-19쪽, 2006.
- 정광열,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2018.
- 정옥년, 「독서문화진흥정책 실행 성과와 향후 과제」, 『책 읽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2014-2018) 실현 방안,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2014.
- 정윤희, 「책문화생태계를 둘러싸고」, 출판저널·책문화생태계연구소, 『책문화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카모마일박스, 2018.
- \_\_\_\_\_, 「책문화생태계와 지역 콘텐츠 발굴」, 『출판저널』, 통권508호, 2018.
- 정윤희·김기덕, 「전자출판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책문화생태계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86호, 2019.
- 정윤희, 「출판저널이 만난 사람-제6기 신기남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출판저널』, 통권 제505호, 2018.
- 정철현,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2005.
- 최봉기, 『정책학개론』, 박영사, 2010.
- 최장현,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과 독서문화진흥정책」, 『도서관문화』, 통권 49호, 2008.
- 최창현·정시구, 『복잡계로 바라본 C-P-N-D ICCT 생태계』, 커뮤니케이션박스, 2015.
- 프랑크 하르트만, 『미디어 철학』, 이상엽·강웅경 옮김, 북코리아, 2008.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문화』, 통권 20호, 1979.
- \_\_\_\_\_, 「특집-도서관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도서관문화』, 통권 제47호, 2006년.

한주리, 「출판정책 평가와 발전 방향 연구: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2012-2016)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산업에 대한 출판사 종사자의 인식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 72호, 2015.  
홍 숙, 「출판과 도서관 관련 국정감사 주요 내용」, 『출판저널』, 통권 490호, 2016.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실 문 연다」, 『내일신문』, 2018년 10월 24일자.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http://www.archive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http://www.law.go.kr))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www.clip.go.kr](http://www.clip.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http://www.mcst.go.kr))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pipa.or.kr](http://www.kpipa.or.kr))





발제 2

**미래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전략 : 콘텐츠 파워의 극대화**

이 지 연 위 원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미래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전략: 콘텐츠 파워의 극대화

2019. 10. 17.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지연



## 목차

- 1. 미래사회의 쟁점들**
  - 1.1 인간, 기술, 윤리
  - 1.2 그 안의 도서관...
- 2. 콘텐츠 정책과 산업**
  - 2.1 정부
  - 2.2 해외
  - 2.3 도서관
- 3. 민간기업의 콘텐츠 사업**
  - 3.1 국내
  - 3.2 국외
- 4. 미래도서관 패러다임**
  - 4.1 4.0 시대의 도서관
  - 4.2 스마트 도서관
  - 4.3 도서관 콘텐츠
  - 4.4 사서의 역할
  - 4.5 사례
- 5. 나아갈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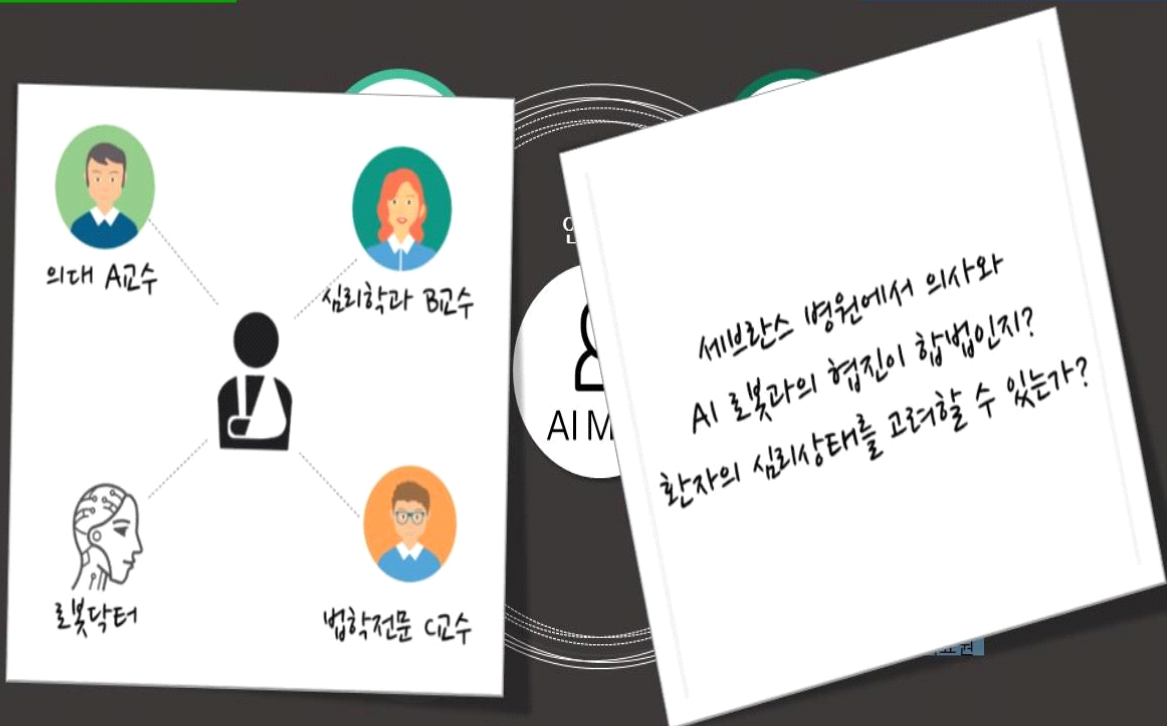
# 1. 미래사회의 쟁점들

1.1 인간, 기술, 윤리

1.2 그 안의 도서관...

## 1.1 인간, 기술, 윤리

## AI 기반 융합 플랫폼



Deep Learning

좋은 AI vs 나쁜 AI

문화 제국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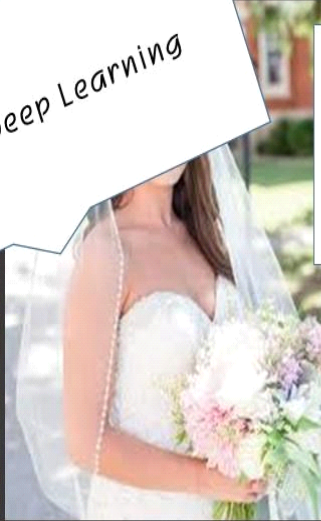


Image from Twirl  
<https://www.twirlbride.com/wedding-dresses/>



Image from Grabon  
<https://blog.grabon.in/different-types-of-indian-brides/>

## 1.2 미래사회의 도서관

### 키워드

- 4.0 시대
- 스마트도서관
- 사서? vs. CKO(Chief Knowledge Officer)
- 콘텐츠 연결, 융합
- 콘텐츠 창작, 향유
- 지식생태계의 진화
- 지능정보 플랫폼
-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 디지털 컨버전스
- 서비스 연결, 통합

⋮

중심개념





## 2. 콘텐츠 정책과 서비스

- 2.1 정부
- 2.2 해외
- 2.3 도서관

### 2.1 정부의 콘텐츠 정책

콘텐츠산업 2018 결산 및 2019 전망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 국내 콘텐츠사어

(단위: 조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p)	2018년(p)	전년대비 증감률
출판	20.6	20.5	20.8	20.8	20.7	-0.3%
만화	0.9	0.9	1.0	1.0	1.1	5.7%
음악	4.6	5.0	5.3	5.7	6.2	7.2%
게임	10.0	10.7	10.9	12.2	13.0	6.0%
영화	4.6	5.1	5.3	5.5	5.8	5.2%
애니메이션	0.6	0.6	0.7	0.7	0.7	5.7%
방송	15.8	16.5	17.3	18.0	18.8	4.9%
광고	13.7	14.4	15.2	15.6	16.1	3.1%
캐릭터	9.1	10.1	11.1	11.6	12.7	9.4%
지식정보	11.3	12.3	13.5	14.7	16.2	10.5%
콘텐츠솔루션	3.9	4.3	4.6	4.8	5.1	6.4%
전체 1)	94.9	100.5	105.5	110.5	116.3	5.2%

[최근 5년간 장르별 콘텐츠산업 매출액]

## 2.1 정부의 콘텐츠 정책

### ○ 출판 분야 이슈 분석

기획: 콜라보 기획, 독자 중심의 다중 전략	유통/소비: 개인을 위한 솔루션 콘텐츠, 소비자 영향력 확대	제도: 출판자 권리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적 컨텍스트와 콜라보하는 출판콘텐츠</li> <li>2. ICT를 활용한 출판콘텐츠의 기획과 확장성</li> <li>3. 독자지향적 콘텐츠 큐레이션 확산</li> <li>4. 캐릭터와 굿즈 병행 콜라보레이션</li> <li>5. 발행 중수 증가세 둔화 예상</li> <li>6. 하이브리드 독서, 다양한 제작 방식 병행 증가</li> <li>7. AI 기술 주목과 함께 오디오 북 콘텐츠 증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용자의 영향력을 활용한 팬덤 마케팅 증가</li> <li>2. 독립서점과 독립출판, 독자를 연결하는 유통시스템 구축</li> <li>3. 짧고 간결한 매력을 주는 작은 패키지 콘텐츠 증가</li> <li>4. 오디오 북의 생태계 조성</li> <li>5. 공감 기반 출판 콘텐츠 서비스</li> <li>6. 디지털 마케팅</li> <li>7. 온라인 업체의 오프라인 진출</li> <li>8. 시대변화와 독자와 함께 가는 출판</li> <li>9. 나를 위한 소비 확대</li> <li>10. 살롱 문화와 결합한 도서 커뮤니티의 확장</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판, 문체부 표준계약서 확정 고시에서 제외</li> <li>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시행</li> </ol>

9

## 2.1 정부의 콘텐츠 정책

### ○ 기타 분야 이슈 분석(1/3)

음악	게임	영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OST(목적성 음악시장)의 저변확대</li> <li>2. 유튜브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li> <li>3. 인공지능(AI) 스피커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li> <li>4.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대중 음악과의 만남</li> <li>5. 해외진출 다각화</li> <li>6. 다변화된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춘 섬세한 저작권법 제정과 적용</li> <li>7. 대중음악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국가지원 방안 모색</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르/플랫폼 다각화</li> <li>2. '보는 게임'이 고려된 게임제작 환경</li> <li>3. 스트리밍 중심 게임과 플레이 중심 게임의 이분화</li> <li>4. 콘텐츠 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논쟁, 게임 콘텐츠 윤리 이슈의 세계적 확장</li> <li>5. 플랫폼 중심의 수출 수입, 온라인 스토어 중심으로 한 게임 수입</li> <li>6.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li> <li>7. 게임결제모델에 관한 더 강력한 제도적 압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액션·드라마 장르의 제작 비중이 높아져 한국 영화 개봉작의 장르 편중 현상 예상</li> <li>2. 애니메이션 영화, 히어로/액션 영화 등 다양한 외화 개봉 준비</li> <li>3. 영화시장 위축 지속 예상</li> <li>4. 선두주자의 지속적 경쟁, 핵심 인력 교체된 배급사, 신규 메인 투자 및 배급사 등장 등으로 변화 예상</li> <li>5. 동남아 신흥시장(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확대에 따른 부분적 실적 증가 예상</li> <li>6. 근로기준법 강화로 단기 수익상 약화 가능성 높으며 문화콘텐츠펀드 규제 완화 필요성 있음</li> <li>7. 지속된 제작·유통시장·수출 환경의 분위기 반전을 위한 전략 및 재검토 필요</li> </ol>

10

## 2.1 정부의 콘텐츠 정책

### ○ 기타 분야 이슈 분석(2/3)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존 애니메이션 IP를 통해 IP사업을 고도화 하는 방향으로 진화</li> <li>2. 오리지널 등 새로운 플랫폼을 겨냥한 작품 기획 활성화</li> <li>3. VR, 실시간 렌더링 등 새로운 제작기술 도입 및 AI, 모바일 기반 콘텐츠 기획 활성화</li> <li>4. 미디어시장 재편 가속화에 따라 뉴미디어 플랫폼 영향력 지속적 확대</li> <li>5.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진출 경로 다양화 및 마케팅 활성화</li> <li>6. 아시아 콘텐츠 시장의 급성장 및 애니메이션 한류 확대</li> <li>7. 중국 유아동 시장 진출에 대한 새로운 모색</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간 치열한 경쟁 심화</li> <li>2.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드라마 제작 환경 변화</li> <li>3. 정치·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콘텐츠 증가</li> <li>4. 제작 형태의 변화</li> <li>5. 비지상파 방송과 넷플릭스의 영향력 확대</li> <li>6. 일본과 동남아 시장의 집중 공략</li> <li>7. K-포맷의 확장</li> <li>8. 중간광고 도입</li> <li>9. 통합방송법 개정에 따른 변화</li> <li>10. 방송평가 강화</li> <li>11. UHD 정책 변화</li> <li>12. 소외된 방송 노동자 보호 확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9년 모바일 트렌드의 핵심은 '5G'</li> <li>2. 음성인식, AI로 개인화 마케팅 활성화</li> <li>3. 모바일 동영상 중심으로 광고 시장 재편</li> <li>4. 경제 침체로 광고 시장 정체 또는 하락 예상</li> <li>5. 광고 규제 완화를 통한 광고 시장 활성화 모색</li> </ol>

11

## 2.1 정부의 콘텐츠 정책

### ○ 기타 분야 이슈 분석(3/3)

캐릭터	지식정보	공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바일 플랫폼이 이끄는 캐릭터 전성기 지속</li> <li>2. 네트워크 시대가 여는 AR/VR 캐릭터 시장 확대</li> <li>3.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캐릭터 시장 확산</li> <li>4.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증대</li> <li>5. 중국 캐릭터 식품 시장 활성화</li> <li>6. 캐릭터 산업의 핵심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 대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성을 기반으로 한 유저 인터페이스(VUI) 본격 확산</li> <li>2. AI 스피커를 통한 쇼핑 및 서비스 유통 확산</li> <li>3. 모빌리티 혁명 가속화</li> <li>4. 네이버(라인)의 글로벌 진출 본격화</li> <li>5. 글로벌 지식정보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 확장</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80년대 추억팔이, 뉴트로 열풍</li> <li>2. 굿즈의 인기</li> <li>3. 활발해진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li> <li>4. 주 52시간 근무제 워라벨</li> </ol>

12

## 2.2 해외 콘텐츠 산업

PricewaterhouseCoopers 보고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시장 전망

### ○ 융복합 현황 및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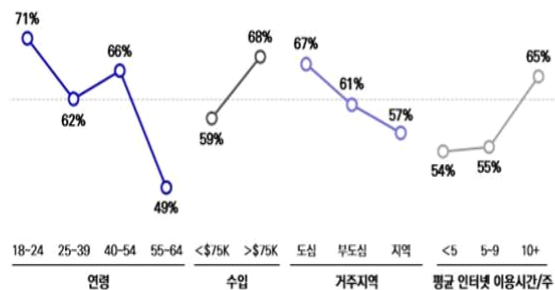
- 경계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융합
  - : 통신과 플랫폼이 수직 계열화, 산업 내 거대 기업 간 수평적 결합이 빈번하게 발생
  - : 기술과 전송을 담당했던 기업들이 콘텐츠 영역으로 진출
  - : 인쇄와 디지털, 게임과 스포츠, 무선과 유선 인터넷, 유료 방송과 OTT, 소셜 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 등 명확하게 구분되던 산업 영역의 경계가 점차 흐려짐
  - :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융합의 형태는 미디어, 접속 방식, 비즈니스 모델, 지역 간 융합의 네 가지로 분류됨
  - : 융합과 산업 변화는 변화를 야기할 새로운 기술로, IoT, 증강현실, 가상현실, 블록체인, 인공지능, 3D프린팅, 드론, 로봇을 예상함
- 팟캐스트 광고 수익의 급증

13

## 2.2 해외 콘텐츠 산업

### ○ 문화기술 동향

- 인공지능의 미래와 신뢰
  - : 인공지능은 콘텐츠 제작, 유통, 마케팅 등에서 효율성과 수익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
  - :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가 이슈가 되고 있음
  - : 인공지능은 인간이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했음에도 구체적인 결정 방식은 개발자도 알기 힘들다는 특성을 지님
  - : 알고리즘 설정이나 기계 학습과정에서 편견을 드러내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 5G
  - : 차세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국인 대상 조사 결과



14

## 2.3 도서관/유관분야의 콘텐츠 정책 및 서비스 사례

### ○ 미의회도서관

: 약 1억개 이상의 자료, 470개 언어로 된 3천9백만권 이상의 장서와 기타 인쇄물, 7천2백만권 이상의 원문 자료 및 법률 자료, 영화, 지도 등 다양한 자료 제공

: 수집되는 자료의 유형 - 자동수집, 쿠키, 개인정보 등

The screenshot shows the Library of Congress website. The main header includes the 'LIBRARY OF CONGRESS' logo and a search bar. Below the header, there are navigation links for 'Library of Congress > Legal', 'Subscribe', and 'Share/Save'. The 'Legal' section is highlighted, containing sub-sections for 'Comment & Posting Policy', 'Standard Disclaimer for External Links', 'Legal', 'General Disclaimer', 'Security', and 'About Copyright and the Collections'. Each sub-section has a brief description of its content.

#### Automatically Collected Information

We strive to provide the best experience for you. We automatically collect and store the following non-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 The name of the domain from which you accessed the internet.
- The internet protocol address of your internet providers' gateways, or in some cases, your computer.
- The date and time you accessed our websites.
- The URL of the pages visited and files downloaded.
- The internet address of the website that brought you directly to our websites.
- Characteristics of your computer system and
- Search terms used to come to the websites and while on the websites (in aggregate only).

This information allows us to improve website design, presentation and system performance. We collect this information from anyone who reads, browses, or downloads information from our websites.

#### Information Collected for Measurement and Customization (Cookies)

To help provide website visitors with the best experience possible, we use cookies and similar technologies to report and analyze aggregated web metrics data. The data is generally retained indefinitely to help improve website performance.

Our sites use three types of tools: session cookies, persistent cookies and other customization tools. "Cookies" are small files that websites transfer to visitors' computers to allow the site to remember specific information. If you do not want cookies transferred to your computer, you may opt out by changing your browser options. Without cookies, most of our websites will continue to display normally, but certain features may not work as well or may be unavailable.

Session cookies do not contain personal information and disappear once the browser window is closed. We use session cookies for technical purposes such as to enable you to more easily navigate throughout the websites. Session cookies only collect non-personally identifiable data.

Persistent cookies store information on your computers for longer periods of time and across multiple visits. We do not use persistent cookies to collect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about visitors. However, we do use persistent cookies to improve web metrics by distinguishing between new and returning visitors, to anonymously aggregate data on how visitors use our websites, and to remember your voluntarily provided preferences to create a smoother browsing experience.

Customization tools allow you to voluntarily provide information to personalize and improve your online experience. Information from customization tools is saved on our servers.

####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may be required to use certain features of our websites, such as making a purchase from our online shop, submitting a request to the Ask a Librarian service, responding to a feedback form, or participating in blog discussions. We always inform you what information is required, and only use that information for its stated purpose. If you provide the information requested, then you consent to our using the information for the stated purpose. If you do not provide the information then some

15

## 2.3 도서관/유관분야의 콘텐츠 정책 및 서비스 사례

### ○ 미의회도서관(사례)

: Cricket Media사와 함께 희귀도서 디지털 앱 'Story Bug' 개발

: 교육미디어 기업과 연계하여 19세기부터 20세기 초기의 희귀 아동도서를 무료로 열람하도록 함

: iOS 기반 앱으로 영상채팅 기능도 지원하여 두 사람이 가상의 독서 공간을 통해 독서활동을 공유

The screenshot shows the CricketTogether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About Us', 'News and Resources', 'Contact Us', and 'eMentor Login'. Below the navigation bar is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Put Students on the Path to Academic Success' and a sub-headline 'A safe, innovative eMentoring platform delivering a life-changing experience for children, employees, and companies.' There is a 'Learn More Now' button. Below the banner is a video player with the title 'CricketTogether: Are You Curious?' and a play button. To the right of the video player, there is a text box that says 'CricketTogether is a meaningful eMentoring Program that:' followed by a list of bullet points: 'Excites kids in under-resourced communities about learning', 'Empowers teachers with compelling subject matter, powerful writing tools, and virtual access to supportive role models'.

16



## 2.3 도서관/유관분야의 콘텐츠 정책 및 서비스 사례

### ○ 미국도서관협회

: ALA 정책 매뉴얼

1) 섹션 A: Organization and Operational Policies / 섹션 B: Positions and Public Policy Statements

2) [B.8 Services and Responsibilities of Libraries] 파트를 중심으로 도서관 콘텐츠, 도서관 서비스, 장서 관리 및 보존 정책 제공

B.8.5 Confidentiality of Library Records

B.8.5.1 The Rights of Library Users and the USA PATRIOT Act

B.8.5.2 Confidentiality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bout Library Users

B.8.5.2.1. Protect Library User Confidentiality in Self-Service Hold Practices

B.8.5.3 Immigrants' Rights to Free Public Library Access

B.8.5.4 Retention of Library Records

B.8.8 Privatization of Publicly Funded Libraries

B.8.5.5 Support of Immigrant Rights

B.8.9 Disinformation, Media Manipulation and the Destruction of Public Information

B.8.6 Library Services for Youth

B.8.10 Library Services to the Poor

B.8.6.1 Youth Services

B.8.10.1 Policy Objectives

B.8.6.2 Sex Education Materials in Libraries

B.8.11 The Role of Libraries in Providing E-Government and Emergency Services

B.8.6.3 Selective Service Information in Libraries

B.8.7 Instruction in the Use of Libraries

17

## 2.3 도서관/유관분야의 콘텐츠 정책 및 서비스 사례

### ○ 미국도서관협회(사례)

: 구글과 협력하여 'Libraries Ready to Code' 프로젝트 시작

: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코딩 활동에 대한 연구 진행

: 도서관이 자유로운 학습의 장이자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및 코딩 관련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프로젝트가 수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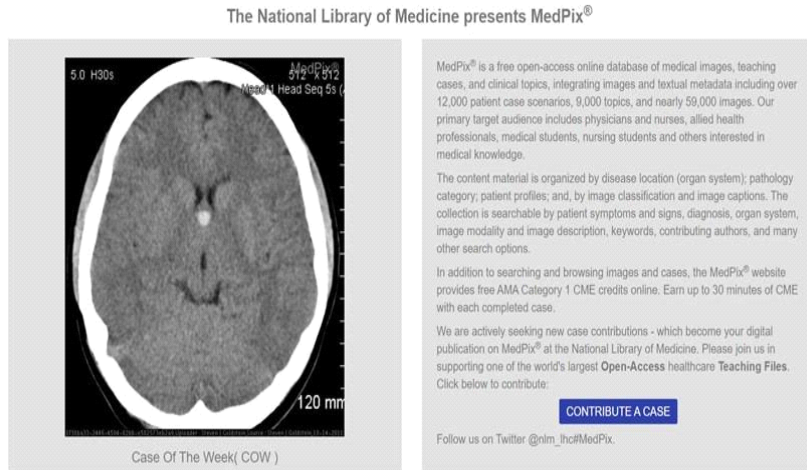
18

## 2.3 도서관/유관분야의 콘텐츠 정책 및 서비스 사례

### ○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

- : 무료 온라인 의료영상 데이터베이스 'MedPix' 공개
- : MedPix의 데이터는 질환의 종류, 기관계(organ system), 환자 프로파일에 따라 조직되어 있음
- : 13,000건이 넘는 사례와 59,000개가 넘는 의료영상을 포함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presents MedPix®



MedPix® is a free open-access online database of medical images, teaching cases, and clinical topics, integrating images and textual metadata including over 12,000 patient case scenarios, 9,000 topics, and nearly 59,000 images. Our primary target audience includes physicians and nurses, allied health professionals, medical students, nursing students and others interested in medical knowledge.

The content material is organized by disease location (organ system); pathology category; patient profiles; and, by image classification and image captions. The collection is searchable by patient symptoms and signs, diagnosis, organ system, image modality and image description, keywords, contributing authors, and many other search options.

In addition to searching and browsing images and cases, the MedPix® website provides free AMA Category 1 CME credits online. Earn up to 30 minutes of CME with each completed case.

We are actively seeking new case contributions - which become your digital publication on MedPix® at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Please join us in supporting one of the world's largest Open-Access healthcare Teaching Files. Click below to contribute:

[CONTRIBUTE A CASE](#)

Follow us on Twitter @nlm\_lhcm#MedP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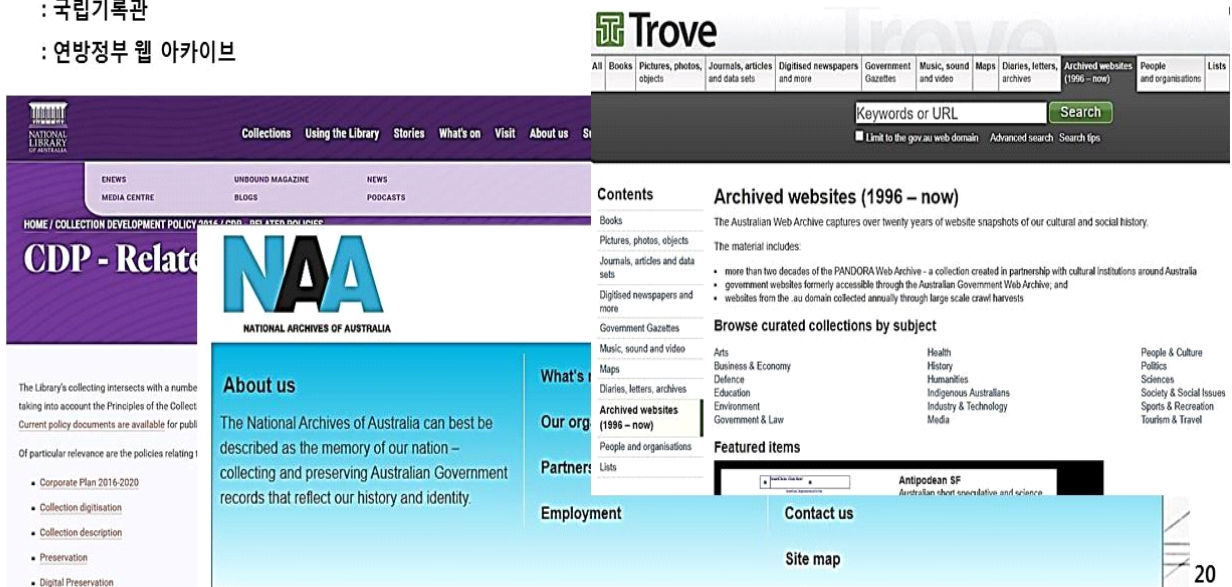
A free online Medical Image Database with over 59,000 indexed and curated images, from over 12,000 patients.

19

## 2.3 도서관/유관분야의 콘텐츠 정책 및 서비스 사례

### ○ 호주

- : 국립도서관 - 장서개발정책, 자료의 디지털화, 수집/폐기/보존까지의 정책 제공
- : 국립기록관
- : 연방정부 웹 아카이브



**Trove**

All Books Pictures, photos, objects Journals, articles and data sets Digitised newspapers and more Government Gazettes Music, sound and video Maps Diaries, letters, archives Archived websites (1996 - now) People and organisations Lists

Keywords or URL  Search

Limit to the gov.au web domain Advanced search Search tips

**Contents**

Books  
Pictures, photos, objects  
Journals, articles and data sets  
Digitised newspapers and more  
Government Gazettes  
Music, sound and video  
Maps  
Diaries, letters, archives  
Archived websites (1996 - now)  
People and organisations  
Lists

**Archived websites (1996 - now)**

The Australian Web Archive captures over twenty years of website snapshots of our cultural and social history.

The material includes:

- more than two decades of the PANDORA Web Archive - a collection created in partnership with cultural institutions around Australia
- government websites formerly accessible through the Australian Government Web Archive, and
- websites from the .au domain collected annually through large scale crawl harvests

**Browse curated collections by subject**

Arts  
Business & Economy  
Defence  
Education  
Environment  
Government & Law  
Health  
History  
Humanities  
Indigenous Australians  
Industry & Technology  
Media  
People & Culture  
Politics  
Sciences  
Society & Social Issues  
Sports & Recreation  
Tourism & Travel

**Featured items**

Antipodean SF  
Australian short speculative and science fiction

**About us**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can best be described as the memory of our nation - collecting and preserving Australian Government records that reflect our history and identity.

**What's new**

**Our organization**

**Partners**

**Employment**

**Contact us**

**Site map**

20

## 2.3 도서관/유관분야의 콘텐츠 정책 및 서비스 사례

### ○ 영국 국립보존기록관

- :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법무부 산하에 있는 독립적인 운영기관
- : 영국 연합왕국 정보와 잉글랜드, 웨일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역사적 공공기록 수집기관
- : 정부부처 및 공공부문 관련, 생산에서 재이용에 이르는 정보정책을 수립
- : 아카이브 및 기록관리 관련 정책
  - 1)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보호법 및 정보자유법, 공공부문 정보규정 등 포함
  - 2) 공공기록물 접근에 관한 정책 / 데이터 보호 관련 정책 / 정보자유법 관련 정책 제공

The screenshot displays a grid of six informational cards from the National Archives website:

- Public Records Act**: Find out about the legislation on public records access and its history. Includes links for Concordat on Welsh public records, The public records system, History of the Public Records Acts, and Public Records Act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e access provisions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came fully into force in January 2005. The Act replaced the access provisions for UK public records set out in the Public Records Act 1958-67 and also governs access to information held by most public sector bodies.
- Data protection legislation**: Data protection law changed from May 2018 with the passing of the Data Protection Act 2018 and taking effect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Information and resources can be found on the Information Commissioner's website. There is special provision in the new laws for the archiving of personal data in the public interest.
-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gives rights of access to a wide range of information. However, rights of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re provided by a separate statutory regime,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 Historical Manuscripts Commission Warrant**: The Royal Commission on Historical Manuscripts was appointed under Royal Warrant in 1869 to make enquiry as to the places where manuscripts and private papers of historical interest were located and to report on their contents.
- Other archival legislation**: There are a number of acts and statutory instruments that go some way towards safeguarding historical records, but in many cases the wording is open to interpretation. This section outlines the main acts, statutory instruments and Measures of the Church of England that have an impact on the care and custody of records.

21

## 3. 민간기업의 콘텐츠 사업

### 3.1 국내

### 3.2 국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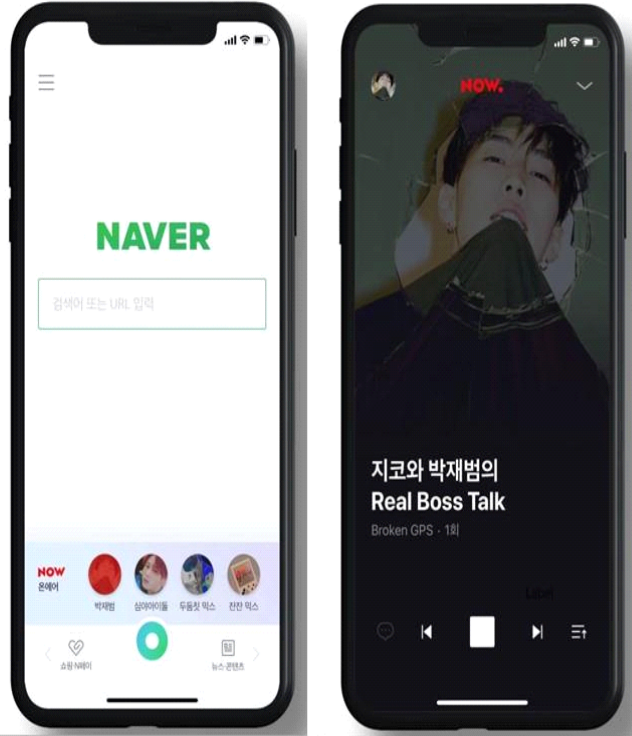
22



### 3.1 국내 기업의 콘텐츠 사업

#### 네이버

- : 오디오 북 콘텐츠
- : 오디오 소리를 인수하고 음성합성 기술인 엔보이스 자체 개발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진행
- :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고 서비스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활성화



23

### 3.1 국내 기업의 콘텐츠 사업

#### SK 텔레콤

: 인공지능 스피커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해 음성 명령만으로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자주 주문하는 생활 필수품, 이제 NUGU 스피커를 통해 주문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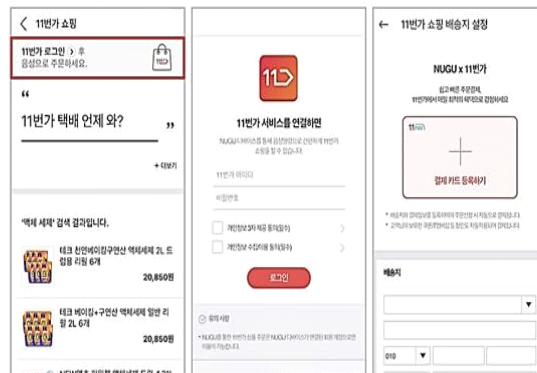
11번가에서 실시간 11번가 조이스 상품 음성명령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11번가에서 액제결제 주문해줘~ 같이 원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나 상품명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 • 설정하기

- \* NUGU 앱에서 11번가 계정 연결 및 11PAY 결제 정보, 배송지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신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NUGU']



24

## 3.2 국외 기업의 콘텐츠 사업

### ○ Google

- : 전 세계 검색사이트의 70% 차지
- : 유튜브, 안드로이드, 딥마인드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
- : 위치정보에 집중함으로써 고객의 context를 파악하는 단계 착수
- : context는 4차 산업혁명을 지배하는 핵심이자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3D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이 발전하는 이유 → 고객의 진짜 의도, 컨텍스트를 읽을 줄 아는 기술

#### : 도서관 프로젝트(Google Books)

- 1) 2002년 "secret books project"를 발표
- 2) 4개 대학(U. of Michigan, Harvard U., Stanford U., Oxford U.)의 도서관과 New York Public Library와 파트너십을 통해 시작
- 3) 2015년 10월 기준으로, 2천5백만권 이상의 책을 스캔

- : 뉴스, 이미지, 동영상, 이메일, 학술자료 등 망라적인 전세계 콘텐츠를 수집, 활용

→ 콘텐츠 생태계의 균형에 대한 질문 야기

25

## 3.2 국외 기업의 콘텐츠 사업

### ○ Netflix

- : 2018년 한 해 투자액 120억 달러를 콘텐츠 개발에 투자, 2019년 15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
- : 2019년 150억 달러 이상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소모
- :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 선점을 가하려는 목적
- : 21세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시작의 판도를 변화시킨 회사
- : 이용자 로그인 데이터를 기계학습에 잘 활용하기로 유명
- : 이용자 빅데이터를 통해, 드라마 제작 시 시청자 선호도를 파악해서 활용

### ○ 기타

- : 2019년 9월 23일자 위클리 글로벌 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 중국 10개 성(시) 초고화질 영상산업 계획 발표
  - 콰이칸만화에 1억2,500억 달러 투자

26

## 4. 미래도서관 패러다임

- 4.1 4.0 시대의 도서관
- 4.2 스마트 도서관
- 4.3 도서관 콘텐츠
- 4.4 사서의 역할
- 4.5 사례

27

### 4.1 4.0 시대의 도서관

#### 4차 산업혁명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
-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초연결, 초지능의 혁신적인 변화를 수반

#### 도서관 변화

- 소장자료의 관리와 장서 중심의 아날로그 서비스 위주에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혁명(3차 산업혁명)을 겪으며,
- 업무환경의 급격한 전환과 새로운 직무로 인하여 컴퓨터 리터러시와 같은 새로운 역량을 요구
- 도서관 자동화는 사서가 창조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제시
- 웹과 디지털도서관이 통합되는 하이브리드 도서관은 콘텐츠 중심의 이용자 서비스의 중요성, 즉 웹 검색기술,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용자 요구 분석의 필요성을 높임

박태연 외(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 사서의 핵심업무에 관한 연구

28

## 4.1 4.0 시대의 도서관

###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 전환
- 사회적 난제 해결에 지능화 융합이 보편화됨
- 삶의 양식과 사회 인프라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력 유발
- 세계적인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 공유의 수월성,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화로 기기간 호환성이 중요해지면서 제품 경쟁력이 아닌 플랫폼 경쟁력이 대두
- 지능정보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제품과 서비스들이 연결 및 통합되어 작동
- 이러한 변화는 개방형 정보화 거버넌스 체제의 도서관으로 변화를 요구
- 문화콘텐츠 창작과 향유의 변화
- 이용자의 문화예술복지에 대한 욕구
-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개인의 문화향유에서 참여로까지 확장시키는 가능성 제시
- 문화기술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요구로 이어짐
- 데이터 센터(클라우드 인프라), AI 기술, **데이터 보유 + 데이터 지속 창출**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요소 필수

박태연 외(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 사서의 핵심업무에 관한 연구

필수 요소를 충족시키는 도서관의 잠재성 발견

29

## 4.1 4.0 시대의 도서관

### 해외 사례

- 미의회도서관
  - 최신의 기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
  - 클라우드 기반에서 디지털 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DuraSpace에서 개발한 DuraCloud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 중국국가도서관
  - '선진 기술로 강화되는 도서관'이라는 전략에 기반
  - 디지털 TV 서비스, 가상현실 서비스, 지능형스택 내비게이션 서비스, RFID 셀프 순환시스템 등을 제공하면 미래도서관 지향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 도서관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NLB labs 플랫폼 운영
  - 이 플랫폼은 도서관 이용자 및 관련 협력단체 등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셋을 활용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정보서비스 개발을 지원
- 영국국립도서관
  - 「Living Knowledge: The British Library 2015-2023」에서 정보기술 혁신에 대응하여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도서관의 비전을 제안
  - 디지털화된 콘텐츠 또는 디지털 콘텐츠(Born-digital Content)의 급격한 양적 성장아래 빅 데이터의 생산, 분석, 관리 분야에 대한 혁신을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는 사서의 역할 강조
  - 원격 접근 서비스 개발

박태연 외(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 사서의 핵심업무에 관한 연구

30

## 4.2 스마트도서관

### 개념

- 도서관 외부에서도 사서의 도움 없이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스마트도서관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로봇, 스마트 서가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어디서든 자유롭게 도서관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의 도서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무인관리 도서관
- 다양한 기술들이 집약되어 만들어진 무인 스마트도서관은 이용자에게 도서관 이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
- 도서관 외부에서 이용자에게 책을 무인으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무인 스마트도서관이 스마트도서관을 이끄는 플래그십(flagship) 모델
- 도서관이 멀어 자주 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나 시간이 없어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도서관 외부의 공공기관, 터미널, 기차역, 지하철역, 대형 마트 등에 설치되어 이용자들에게 도서의 대출과 반납 서비스 제공
- 평소에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지만 여건이 부족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책을 접하고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 잠재적인 도서관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함

곽승진, 손청기, 장근영(2018). 무인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사용성 평가 연구

### 특징

- 인쇄매체 중심의 전통적 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을 거쳐 스마트도서관으로 진보하고 있음
- 도서관의 정보시스템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아키텍처를 활용, 열람실은 무인으로 제공.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스마트도서관은 단순히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만든다거나 열람실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단순한 방법 활용

이주화, 노은실, 이명숙(2019). IoT를 이용한 스마트도서관 모델 연구

31

## 4.2 스마트도서관

### 스마트 서가

- 스마트 서가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도서관: 스마트 키오스크, 스마트 서가, 스마트 북박스(스마트 사이드서가), 스마트 테이블로 이루어짐
- 이용자들이 의해 스마트 서가, 스마트 테이블, 스마트 북박스에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는 키오스크로 전달되어 관리자에게 도서배치알람, 도서 이용현황, 이용도서 열람통계산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

장근영, 곽승진(2018). 스마트 서가를 이용한 도서 이용현황 분석 연구

### 제안

- 스마트 라이브러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개념화하고 최근의 관행 및 최신 기술에 따라 스마트 라이브러리 구축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
- 기존의 문헌과 도서관 건축에 관한 실무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통해 유사한 유형의 스마트 라이브러리를 구별하고 스마트 라이브러리 구축과 관련된 개념을 기술, 서비스 및 사람으로 나눔
- 기존 도서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마이닝 및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전략적 설계 및 구현에 의해 스마트 라이브러리로 전환할 수 있지만, 서비스 구축, 사용자 육성, 사서 교육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라이브러리(기술, 서비스 및 사람)의 3가지 주요 차원에 맞추어 스마트 라이브러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프라 통합, 서비스 구축 및 인간 학습이라는 전략적 원칙을 제시

Gaohui Cao, Mengli Liang and Xuguang Li(2018).  
How to make the library smart?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smart library

32



## 4.3 도서관 콘텐츠

### 콘텐츠 통합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유산기관에 소장된 문화콘텐츠의 성장이 기하급수적임. 이러한 문화유산기관들의 각 자원의 속성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의 필요성이 요구됨
-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문화유산관련 자료 정보의 조직과 검색의 효율성 증대 및 유통의 표준화를 선도

조윤희(2004). 문화콘텐츠 통합을 위한 메타데이터 포맷 연구

### 사례

- DPLA (The 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는 미국의 오픈 액세스 디지털 콘텐츠를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유산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하는 플랫폼이자 포털임
- 개방형 데이터 및 API를 제공하여 제3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컬렉션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OA 디지털 라이브러리 자료의 축진을 모색하고자 함
- DPLA는 디지털 라이브러리와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는 두 가지 분류를 중심으로 구성됨
- 콘텐츠 허브는 디지털 오브젝트 컬렉션을 제공하는 대규모 리포지토리(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 조지아 서비스 허브는 책, 원고, 이미지, 정부 문서 등 다양한 형식으로 디지털화된 1차 소스 객체를 제공하는 GALILO Initiative 프로젝트인 Georgia(Digital Library of Georgia)의 디지털 라이브러리(DLG)임

Jason Simon Murphy(2016). Reflecting the Science of Instruction? Screencasting in Australian and New Zealand Academic Libraries

33

## 4.4 사서의 역할

### CKO

- 지식 관리 도구,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인간의 지식을 구현하는 공예품으로 간주되며, 지식은 초반, 중간 또는 최종 단계에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소비를 위해 생산됨. 따라서 CKO는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모든 지식 활동을 감독함
- CKO의 특징: 기술이 지식 수집, 저장 및 공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기술자(technologists)이자, 의도적인 지식 교환이 가능한 환경운동가(environmentalists)로서의 역할 수행
- 지식 공유 활동에 있어 CKO의 필요성
  -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을 촉진
  - 신속한 프로덕션 또는 서비스 제공
  - 시너지 효과로 리소스를 공유함으로써 지식 가치 사슬에서 높은 효율성 창출
  - 업무의 효율적인 분담을 통한 전문화 실현

Nick(2001). CKO wanted — evangelical skills necessary: a review of the Chief Knowledge Officer position  
Earl and Scott(1999) Opinion: What is a Chief Knowledge Offi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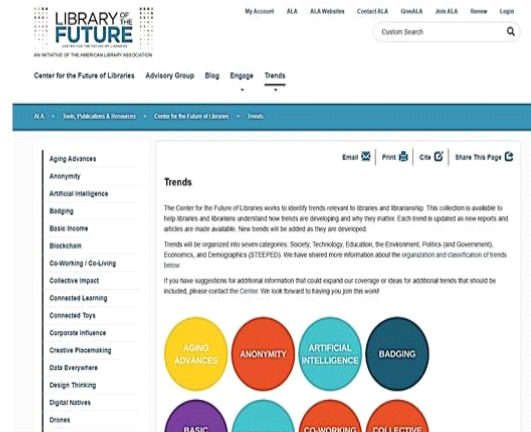
CIO에서 발전된 개념인 CKO의 전문성을 미래 사서의 역할에 접목시킬 필요성 대두

34

## 4.5 사례

### Center for the future of libraries

-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운영
- 사서와 도서관이 알아야 할 관련 트렌드를 요약 제공
- 콘텐츠는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추가되거나 수정되고 있음
- 약 40여가지의 트렌드를 7개의 개념(STEEPED: Society, Technology, Education, Environment, Politics & Government, Economics, Demographics)에 따라 분류
- Data everywhere에 대해 정리 - 콘텐츠, 데이터 관련
- 데이터 수집은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나, 새 기술과 함께 한다면 수집, 저장, 분석, 개인화 등을 발전시킬 수 있음
  - IFLA의 리포트(Riding the Waves or Caught in the Tide?)에 의하면 그 예로 전자책을 들고 있음 : 전자책을 이용하는 이용자 - 한 챕터를 끝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좋아하는 부분은 어디인지, 읽는 속도는 얼마나 걸리는지를 바탕으로 한 Information mining은 작가, 출판사 등에게 다음 작품을 내는데 있어 크게 적용될 수 있음
  - 학교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학생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층의 정보를 수집, 분석, 추적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도서관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조직으로써 정부, 사업, 다른 조직과 연계하여 공유하는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또한 데이터가 중요해질수록, 도서관은 리파지토리를 생성하여 연구 데이터를 연결해주고 분류하며 데이터를 디지털 환경에서 접근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
-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공유된다는 점 - 도서관은 그 환경에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혹은 다양한 정보 원천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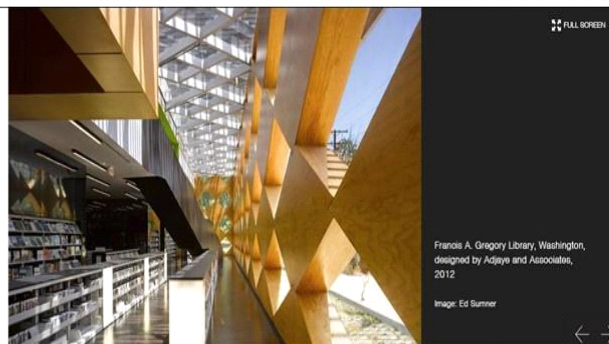


35

## 4.5 사례

### The once and future library

- MIT에서 Future of the library라는 주제로 2016년에 토론회 이루어짐
- 주제에 대해 사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5가지 토픽별(Preserving the cultural record, Material Culture, Future of collection, New spaces for new research, The ideal library space)로 정리
  - 그 중에서도 Future of collection에 대해 정리 - 콘텐츠, 데이터 관련
  - Future of collection에 있어 쟁점은 인쇄자료와 전자자료를 어떻게 배분하여 수집할 것인가 - 토론회에 참여했던 사서들은 더 이상 인쇄자료만을 수집할 수 없으며 전자자료 수서와 관련하여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
  - 특히 한 사서는 도서관에서 Digitize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웹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언급



#### The once and future library

Librarians, architects, and other scholars gather at MIT to reflect on the future of libraries.

36

## 4.5 사례

### AI in libraries(1/2)

- IFLA
- 2019년, EuroDIG에서는 도서관 내에서의 AI (데이터를 분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짐
- AI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의 근본을 변화시키고 있음
- 이렇게 변화된 인터넷이 도서관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서관은 디지털 변화에 있어 살아남아야하기 때문에 그 가치와 사회의 니즈를 유지해야만 함
- AI는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에서도 사용되기 시작 (예. e-Service)
- AI에 의존할 시대가 곧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AI 의존은 그 기저에 인터넷 액세스나 디지털 리터러시를 요구하고 있음
- 인터넷 액세스와 디지털 리터러시 모두 도서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교육임
- 그러므로 도서관은 필연적으로 디지털화 된 공공의 서비스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도우는 중요 업무를 맡게 될 것
- 인터넷은 점점 AI의 형태가 될 것
  
- 도서관은 AI 인터넷 거버넌스의 중심에서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을 것
  -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 : AI를 사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윤리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함
  - AI 윤리와 관련한 연구를 지원할 것
  - 리터러시를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 AI를 둘러싼 공공의 논의를 격려할 것
  - AI와 함께 살기 위한 교육과 AI의 도움과 함께 하는 교육을 진행

37

## 4.5 사례

### AI in libraries(2/2)

- UNC Chaple Hills Health Science Library
- 본 대학에서는 AI research guide를 제공 - Reinforcement Learning for Structural Evolution(ReLeaSE)라고 불림
- 두 개의 Neural Networks를 합친 알고리즘이자 컴퓨터 프로그램 - 교사와 학생이 공존하는 시스템
- 학생들이 하나를 배우고 그 다음스텝으로 나아감에 있어 맞고 틀리고를 확인해줄 수 있음
- 연구자들은 가상스크린을 통해 자신만의 화학 연구 자료를 평가할 수 있으나 이것은 오로지 존재하는 물질들로만 가능 : 그러나 ReLeaSE는 새로운 물질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음
- 짧은 시간 안에 본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그리고 특허를 낼만한 화학 입자들을 디자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수단이 될 것

The screenshot shows the UNC Health Sciences Library website. The header includes the UNC logo, 'UNIVERSITY LIBRARIES Health Sciences Library', and 'HSL's Hours'. A navigation bar contains links for 'Find', 'Research & Teaching', 'Using The Library', 'About', 'Support HSL', 'My Library Account', and 'Ask U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Appreciative Inquiry & Positive Psychology Resources: Getting Started' and 'Resources for the AI Community at Carolina'. It features several resource boxes: 'Getting a Handle on Appreciative Inquiry' (listing articles like 'The Problem with Problems' and 'Appreciative Inquiry: Using Appreciative Inquiry to Make Change Happen'), 'AI Practitioner Access for UNC Users' (providing access to the journal 'Appreciative Inquiry Practitioner'), and 'AI & Positive Psychology Resources @ Carolina' (listing resources like 'Appreciative Inquiry at www.unc.edu' and 'Appreciative Inquiry booklet').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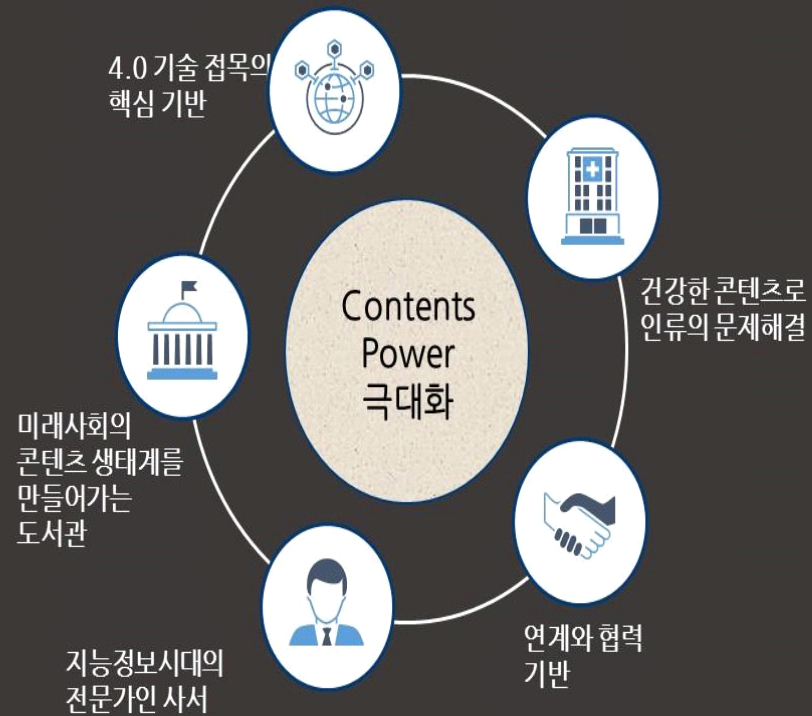


## 5. 제언

39

### 나아갈 방향

도서관 본연의 기능 극대화: 콘텐츠 파워  
Leading Innovation for the World



 발제 3

[  
국가도서관위원회(가칭)의  
위상과 과제  
]

이 상 복 위 원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국가도서관위원회(가칭)의 위상과 과제

이 상 복 위 원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현재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도종환 의원 대표 발의 하에 국회 법안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 도서관법에는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고 장애인등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질 법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특징은 모든 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고,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하며, 도서관 정책에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안 제 12조 및 13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현 도서관법에 있는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명칭과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필자는 현 도서관법 하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과거 설치에서부터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고 법의 취지와 도서관계 현실에 맞게 위원회가 잘 운영되었는지? 만일, 잘못 운영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해 진단해보고 이러한 기초적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개정 법안에 있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위상과 과제에 대해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출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6년 개정된 「도서관 법」에 명시된 기구이다. 당시 도서관계 상황은 2006년 8월 세계도서관대회(WLIC)가 조직위원장인 신기남의원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도서관계 요청을 받아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 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도서관법에 법정기구로 들어간 것이다. 도서관계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했던 당위성은 다음 사항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 당시 도서관정책은 지역공공도서관은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학도서관과 일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은 교육부에, 전문도서관은 과학기술부에 주무부서가 설치되어있어 국가

차원에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조정하는 총괄적인 상위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 역할의 중요성에 걸맞게 도서관 정책 전반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 자문 할 수 있는 상위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 부서 내 도서관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하부조직으로 되어있고 타 전문 직종에 비해 도서관 위상이 현저히 낮아 도서관 위상제고를 위한 국가차원의 위원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6년 9월 「도서관 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시행령 및 시행세칙이 마련되어 2007년 4월에 발효 되었으며 동법 12조에 규정한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조치는 한국도서관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획기적인 일이었다.

동 위원회가 법적기구로 탄생하게 되는 데는 2000년대 이후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한국 도서관계의 위상과 대통령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신기남 의원을 비롯한 도서관계 지도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볼 수 있다. 동 위원회는 2007년 5월에 한상완 초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와 위원회를 지원하는 1단 2과 1팀 24명으로 구성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4호).

## 2) 위원회 폐지위기와 부활

참여정부가 끝나고 제 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작은 정부”, “실용정부”를 내세우며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2008년 1월 16일) 인수위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폐지를 거론하면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그 이유를 “실효성부재”라고 결론지었다.

인수위 잠정결정에 당혹한 도서관계는 신속하고 주도면밀하게 위원회 폐지의 부당성을 담은 공문 형태의 성명서를 인수위, 국회의원 전원,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유관기관에 보냈으며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단체와 사서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한상완 정보정책위원장, 김태승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은철 부회장 등이 국회 15개의 의원실을 방문하여 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서관법」 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철회지지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신기남 의원의 국회의원 설득이 큰 힘을 발휘했다. 당시 정부조직 개편안은 12조에 이르는 합의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마지막 조항인 “12.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고 정하면서 위원회 문제가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사항이 되었다. 양당 원내대표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소속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고 기사화 되면서 신기남 의원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양당대표를 만나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양당 문광위 소속의원

및 원내대표 간사를 다시 만나 존치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다.(2008년 2월 25일)<sup>1)</sup>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당시 숱한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를 지켜낸 것은 신기남 의원의 고군분투와 한국도서관협회와 산하단체의 적절한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서관 현장 사서들의 성원이 이룬 성과였으며 이는 오늘날의 젊은 사서들에게 널리 알릴 교훈적 역사라고 생각한다.

### 3) 그 후 그리고 현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 정책의 주요사항을 수립,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법정기구이다. 위원회가 법이 정한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독립적인 일정규모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지원조직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그간 위원회와 기획단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회의 위상과 기획단의 조직이 조금씩 쇠락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2기 위원회부터 5기 위원회까지(2009년~2017년) 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위원회 구성, 예산, 기획단 조직과 인력 면에서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저해가 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통제와 간섭에 놓이게 되었다.

우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의 추천을 무시한 채 위원장과 위원 모두를 기획단에서 선정하여 장관의 제가 후 최종 결제를 받는 형식이 관행화 되어 버렸다. 따라서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특히 비전문가 위원들은 도서관 정책수립과 심의·조정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둘째, 위원회 예산은 최소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이 편성되었고, 편성된 예산도 위원회 예산이라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라는 느낌을 갖게 했다.

셋째, 기획단 조직과 인력은 위원회 위상에 따라 수시로 변화했으며 대부분 축소되었다. 대략적인 조직개편 경과를 보면 1기 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1단 2과 1팀 24명(200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4호)으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출범했으며 단장은 이사관급 국장 이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로 기획단은 도서관 정책과(9명)와 도서관진흥팀(10명)의 1과 1팀 20명 체제로 축소·변경 되더니 다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에 따라 기획단을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진흥과, 박물관정책과 3개과로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는 기획단 조직의 가장 큰 변화는 2013년 12월 12일 중앙정부의 세종청사 이전을 즈음하여 직제개정을 단행하여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진흥과의 2개과를 통합하여 도서관 정책 기획단으로 개편하였고, 2014년 2월 직제 개정에 따라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의 명칭을 문화

1) 도서관문화 Vol.49 No.2. (2008.2)

기반국으로 변경하고 인문정신문화과, 도서관정책기획단, 박물관정책과의 3개과로 개편하였으며 이는 다시, 2017년 9월 지역문화정책관소속의 도서관정책기획단으로 바뀌었다.

이렇듯, 위원회를 지원하기위해 만들어진 독립적 성격을 갖는 기획단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문화체육관광부내에서 수시로 바뀌게 되었고, 급기야는 기획단장의 직급이 국장(이사관급)에서 과장(서기관급)으로, 조직의 규모도 ‘과’규모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그간 위원회 설립과 위기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신기남 의원이 2018년 4월 6기 정보정책위원장으로 위촉됨으로서 도서관계의 기대와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어도 위원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선 위원회 구성에 있어도 문체부와 기획단이 과거 관행을 답습했으며 위원장의 추천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결국 위원장의 강력한 요구로 위원장 추천 4명을 포함시켜 위원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예산 부분도 2017년 기 편성된 예산과 사업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위원장과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도서관운영평가사업에 일부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현안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 위원중심의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려는 계획은 위원회 사업 성격과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일부 긴급한 현안에 관한 T/F관련 비용은 회의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6기 위원회의 가장 큰 업적은 독립적인 사무공간과 전임인력의 확충을 통해 명실상부한 위원회 지원조직을 갖췄다는 점이다. 독립공간과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무려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 되찾은 데에는 위원회의 위상제고와 실효적 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장의 결의에 찬의지와 문체부, 행안부 등 정부부처의 협조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7층에 마련된 위원회 사무 공간에서 8명의 전담인력(사무국장(단장 겸임), 과견6명, 전담 2명)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여명 이상이 회의할 수 있는 회의공간도 마련되어있다.

## 2. 위원회의 설립기반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었던 실증적 모델은 1970년에 출범했던 미국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 NCLIS)<sup>2)</sup>였다. NCLIS는 1969년 존슨(Johnson)대통령의 자문그룹인 ‘국가도서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Libraries : 일명 Knight Commission)의 건의로 도서관 정책기능을 갖는 연방정부 산하 상설기구로서 NCLIS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 NCLIS관련 법안은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수차례 걸쳐 수정 보완 되었으며 개

2) 이용남.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관한 분석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4(2) 2003. p. 99

정의 방향은 행정부 내 독립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서비스 (예산, 회계, 재정보고, 직원, 물품조달 관련사항 포함)를 제공하도록 명문화 한 것이다. NCLIS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미국의 도서관정보정책을 조사·연구·개발하여 이를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 보고·건의·자문하여 그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다.<sup>3)</sup>

NCLIS가 했던 주요 활동으로 백악관회의(WHCLIS)를 개최한 일을 꼽을 수 있다. 1차 백악관 회의는 지미카터(Jimmy Carter)대통령 시절인 1979년 11월 워싱턴에서 5일간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1977년부터 준비하여 각 주별로 도서관행정가, 사서, 교육자, 공동체 대표들이 사전회의를 통해 워싱턴 회의에 참가할 대표단과 의제를 선정하여 총 806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WHCLIS에 넘겨졌던 해법은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했으며, 특별히 리터러시와 인종집단 그리고 장애인의 정보접근향상에 중점을 둔 총 64개 정책제안을 채택했다.<sup>4)</sup>

2차 백악관 회의는 1991년7월에 5일 동안 열렸으며,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각 주 단위 예비 회의에서 10만 명 이상이 본 회의에서 논의되길 원하는 2,500여개 정책 안건을 추출했으며 워싱턴 본 회의에서는 984명의 도서관계 대표와 1천여명의 각 분야의 대표들이 국가의 도서관정보정책을 논의하여 최종 95개의 정책제안을 결의했다. 최종 권고안의 중심테마는 리터러시, 민주주의 그리고 생산성으로 압축되었으며 향상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자금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게 되었다. 회의 보고서인 'Information 2000(NILIS, 1991)은 새로운 도서관 법안인 도서관서비스 및 기술법(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 LSTA)과 새로운 도서관 행정기구인 IMLS의 토대가 되었다.

NCLIS가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는데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2년 초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가 위원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 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OMB는 NCLIS업무는 정부 내 다른 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음으로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연간 1백만 달러의 정부예산을 절약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NCLIS 간부들은 OMB를 비난하면서 오히려 재정 부담을 280만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NCLIS의 주장의 핵심은 위원회가 당초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것으로 OMB가 주장한 NCLIS의 기능이 박물관 및 도서관서비스연구소(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 IMLS)등의 다른 기관으로 흡수된다면 지금까지의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IMLS는 전국도서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집행기관인 반면 NCLIS는 정책자문기구로서 두 기관이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NCLIS와 ALA 그리고 미국도서관계의 노력으로 2003년에 미 의회는 OMB의 구조개혁 제안을 기각하고 그 대신 NCLIS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1백만달러 예산 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며 NCLIS는 해체위기에서 기사회생하게 되었다.

3) 전개서. p. 100

4) 전개서 p. 102~59 /ALA Introduction to public Library, p.57



지금까지 간략하게 요약한 NCLIS 탄생과 성과에 관한 제한된 역사는 우리에게 대통령 소속정보정책위원회를 법적기구화 하는데 영감을 주었을 것이며 또한 2008년 대통령 인수위에서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위기상황에서 미국NCLIS의 2002년 예산지원 중단과 IMLS와의 통합 저지사례가 많은 교훈이 되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 3.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상과 과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도서관법전부개정(안)이 확정·발효되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추진 중인 법안 속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국가도서관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만 바뀌었지 12조(설치), 13조(구성) 등 위원회 관련 법률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특히 국가위원회로서 위상과 업무와 관련된 13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항, ②항, ③항은 현 도서관법 12조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개정안에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명칭변경이 왜 필요했을까? 근거가 될 수 있는 명문화된 자료를 찾을 수 없었지만 아마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첫째, 도서관정책을 수립·심의·조정하고 운영평가와 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국가차원의 총괄적인 아젠다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있으나 실제적으로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시행은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 전부이며 나머지 도서관 관련 정책, 제도 및 운영개선은 각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수립·시행·통제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전국 도서관운영평가에 있어서 현재는 공공도서관과 병영, 교도소도서관은 적극참여하고 있으나 학교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은 일부만 참여하고 대학도서관은 거의 참여하지 않아 반쪽자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이 참여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평가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라고 생각하며 교육부와 주관부서인 대학도서관이 참여를 꺼려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대학도서관평가는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독자적으로 시상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모름지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관중별 도서관이 도서관운영평가에 임할 수 있는 방안은 평가 주체가 문체부가 아닌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되어야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국가도서관위원회라는 상징성과 위상을 고려했을 것이다. 사실 정보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도서관계획과 정책수립 및 심의조정이 가능하지만 위원회 명칭에 국가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서 권위와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넷째, 개정될 법안에 있는 위원회는 13조 2항(종합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두며 필요한 인원을 관련기관에서 과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무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안이 마련 중이다. 물론 이에 관한 사항도 정보정책위원회 설치(제12조)에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2~5기위원회에서 정상적인 기능 수행과 이에 따른 사무기구 및 과전공무원의 요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사무기구와 과전공무원 및 전담인력도 위원장 개인의 노력의 결실 이었다. 따라서 국가 위원회라는 권위와 위상으로 사무기구 설치 및 관련 공무원과전에 수월성과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기능과 역할 그리고 도서관계의 염원을 담아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마지막으로 이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로, 위원회의 위상제고에 노력해야한다.

현재 정부조직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총 22개(행정위원회 3개, 자문위원회 19개)가 된다.<sup>5)</sup> 이들 위원회는 대부분 조직, 예산, 지원인력이 위원회관련 정부부처의 협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각 위원회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통령과 국가정책우선순위 그리고 위원회를 관할하는 정부부처에 따라 운영행태에 차이가 많다. 예를 들면 대통령 소속 일자리위원회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은 대통령과 국가정책 우선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관할 정부부처의 예산지원, 지원조직 및 인원의 규모가 정보정책위원회와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대통령의 관심과 정책우선순위는 대부분 주요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그리고 관심의 대·소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각 위원회는 저마다 국가차원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된 것이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통령 소속의 법정기구로 설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문화복지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6기 위원회 출범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도서관 정책과제와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포용 정책을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했던 3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이 완성된 2019년 1월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다. 이 점에 대해 필자는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간 위원회의 위상저하와 위원회에 대한 도서관계의 성원부족에 대해 우리 모두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5) 2019년 6월 기준 행안부자료

여기에서 우리에게서 앞서 언급한 미국의 백악관회의(WHCLIS)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즉, 상향식 의제선정과 철저한 숙의과정 그리고 최종적인 정책제안 절차에 미국사회와 언론 그리고 정부와 의회에서 관심을 갖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치밀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무엇보다도 개별 의제들이 대통령과 의회가 관심을 갖게 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1차 백악관회의는 이미 1970년대 존슨 대통령시절 빈곤과의 전쟁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했으며 이에 도서관은 리더러시, 소수인종집단과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향상에 대해 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정책을 만들어 1979년 카터 대통령의 백악관 회의에서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2차 백악관회의에서도 1980년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책무로 리더러시, 민주주의, 투입예산에 대한 서비스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1991년 백악관 회의에서 제안했다. 이렇듯 미국 도서관계는 NCLIS와 ALA가 중심이 되어 광범위한 도서관 여론수렴과정에 힘썼으며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 갔다.

이에 우리 위원회도 앞으로 소극적인 하향식 정책개발에 치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서관 현안을 조사연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 임기동안 이러한 절차가 정례화 된다면 위원회의 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도서관법 12조(위원회 설치)와 개정 도서관법13조에는 종합계획수립·시행, 제도 및 운영개선, 평가, 이용격차해소,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허점은 계획수립과 제도 및 운영개선 그리고 평가를 하기위해 다양한 현안과제를 조사·발굴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위원회는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도서관운영평가 외에는 특별히 위원회의 역할이 있을 수 없다. 혹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정책포럼과 세미나가 연구·조사기능을 하고 있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생각해볼 때, 조사·연구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도서관 관련 정부부처의 조사·연구기능과 중복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따른 업무조정이 불가피 할 수 있을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조사·연구기능이 빠지면 당연히 심의·조정이 부실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차원의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는 위원회가 수행해야하며 이에 상응하는 예산 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도서관인에게 묻고 싶다. 우리에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어떤 존재이며 의미일까?

저는 위원회는 도서관과 사서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의 자존적 존재이고 의미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2009년 해체위기에서 일치단결하여 위원회를 지켜냈으며 이제 다시 위원회 위상회복과 정상적인 역할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신기남위원장에게 박수와 성원을 보내지 않았던가? 우리 모두가 위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하고 싶다.



별 첨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19.10.8./대통령령 제30111호)



#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11호, 2019. 10.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회의 준비,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심의 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무기구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 ◎ 대통령령 제30111호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무기구)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2. 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 및 검토

3. 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4. 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겸임한다.

③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은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 제목“(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을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를”을 “의결을”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